

관세연구 18-04

주요국의 반덤핑 직권조사 규정 연구

2018. 12

주요국의 반덤핑 직권조사 규정 연구

2018. 12

연구진

연구책임자

정 재 호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노 영 예 전문연구원

박 지 우 전문연구원

목 차

I. 서론	1
II. 주요국의 반덤핑 직권조사 규정 및 운용현황	4
1. 관련 규정	4
가. WTO	4
나. 미국	9
다. 중국	18
라. EU	20
마. 우리나라	29
2. 집행기관	33
가. WTO	33
나. 미국	33
다. 중국	43
라. EU	45
마. 우리나라	48
3. 요건	50
가. WTO	50
나. 미국	52
다. 중국	54
라. EU	56
마. 우리나라	58

4. 조사 절차	61
가. WTO	61
나. 미국	64
다. 중국	69
라. EU	72
마. 우리나라	75
Ⅲ. 주요국의 직권조사 사례	80
1. 미국	80
가. (사례1) 일본산 반도체	81
나. (사례2) 중국산 알루미늄	84
2. EU	86
Ⅳ. 국제비교 및 요약	88
1. 직권조사 규정	88
2. 집행기관	91
참고문헌	94

표 목차

〈표 II-1〉 WTO 반덤핑 협정상 직권조사 개시 규정	6
〈표 II-2〉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상 직권조사 개시 규정	8
〈표 II-3〉 미국 「관세법」상(Tariff Act of 1930) 직권조사 개시 규정	11
〈표 II-4〉 직권조사 「무역이행법」 발의안 전문(S.2427)	15
〈표 II-5〉 「중국 반덤핑조례(中华人民共和国反倾销条例)」 제18조	19
〈표 II-6〉 WTO 반덤핑 협정 및 Council Regulation(EC) 384/96상 직권조사 개시 규정	21
〈표 II-7〉 Council Regulation(EC) 384/96 및 Regulation(EU) 37/2014상 직권조사 개시 규정	22
〈표 II-8〉 Regulation(EU) 37/2014 및 Regulation(EU) 2016/1036상 직권조사 개시 규정	23
〈표 II-9〉 Regulation(EU) 2017/2321상 직권조사 개시 규정	24
〈표 II-10〉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및 Council Regulation(EC) 2026/97상 직권조사 개시 규정	28
〈표 II-11〉 Council Regulation(EC) 2026/97 및 Council Regulation(EU) 37/2014상 직권조사 개시 규정	29
〈표 II-12〉 EU통상총국 예산(2018~2019년)	46
〈표 II-13〉 무역위원회 예산(2018~2019년)	50
〈표 III-1〉 미국 국내법에 따른 무역조치 현황(1980~2016년)	80
〈표 III-2〉 미국의 반덤핑 직권조사 개시 이후 미·중 통상분쟁 양상	85

그림 목차

[그림 II-1]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조직도 (2014년 조직개편 반영)	37
[그림 II-2] ITC 예산 내역(2016~2018년)	39
[그림 II-3] 국제무역관리청(ITA) 조직도	40
[그림 II-4] 중국의 무역구제제도 집행조직	44
[그림 II-5] EU통상총국(Taxation and Customs Union) 조직도(2018년 7월 기준)	47
[그림 II-6] 무역위원회 조직도	49

I. 서론

- 세계 각국은 무역장벽 제거를 통한 자유무역 기조 확립을 위해 GATT를 창설하였으며 GATT는 1995년 오늘날의 WTO로 발전하여 국제무역의 황금기를 맞이하게 되었음

- 그러나 국제무역 질서 및 전 세계적 자유무역 확대를 주도한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보호무역주의로 정책 노선을 선회하여 반덤핑관세 부과 같은 무역구제조치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함

- 미국 상무부는 32년 만에 처음으로 업계의 청원 없이 직권으로 중국산 수입품 덤핑 및 불법 보조금 관련 조사를 개시했으며 주요국 또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하거나 기존 규정을 활용하여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자 함
 - 중국은 미국산 농산품에 대해 상무부 직권으로 덤핑 및 불법 보조금 관련 조사를 개시하였음
 - EU는 중대한 왜곡의 개념을 도입하여 중대한 왜곡이 있을 시 EU집행위원회가 직권으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도록 권한을 확대하였음
 - 또한 미국, 중국, EU는 반덤핑 우회행위도 조사당국의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음

- 관련 업계가 제소하면 조사당국이 검토 후 반덤핑 또는 보조금 관련 조사를 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조사당국이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하면 무역구제조치가 양적으로 증가할 수 있고 특정 산업에 대한 타겟 조사 또한 가능해짐

- 조사 개시를 결정하려면 수입국에서 덤핑 또는 보조금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지만 조사가 개시되면 수출국에서 혐의를 입증해야 하므로 자국 산업의 보호와 이익을 위해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음
- 그러나 WTO 반덤핑 협정 및 보조금과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서는 덤핑이나 보조금, 피해의 인과관계가 있을 시 특정상황에서 당국의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제사회 규범에 위배되지 않음
- 따라서 주요국 직권조사에 대응하여 향후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로 우리나라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도를 조사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산업 이해관계자(동종물품 생산자)가 조사당국에 조사 신청한 경우에만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가 개시되며 해당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도 요청할 수 있으나 실제 부과된 사례는 없음
 - 우회덤핑 관련 별도 규정은 없음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주요국 및 우리나라 반덤핑 및 상계관세 직권조사 규정 및 규정 변화, 운용현황, 직권조사 적용 사례 등을 조사하여 비교함
 - 최근 무역 분쟁이 발생하여 반덤핑 및 상계관세 직권규정을 활발하게 적용하거나 개정하고 있는 미국·중국·EU를 주요국으로 선정하였음
- 본 연구는 제 I장 서론을 포함하여 총 4장으로 구성됨
 - 제 II장에서는 WTO 반덤핑 협정 및 보조금과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을 비롯하여 미국·중국·EU·우리나라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규정상 직권조사 규정, 규정의 내용, 규정의 개정 내용 등을 조사하였음
 - 또한 WTO·우리나라·미국·중국·EU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운용현황으로 집행기관, 부과요건, 부과절차에 대해 조사하였음

I. 서론 3

- 제Ⅲ장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직권조사 적용사례를 정리하였음
- 제Ⅳ장에서는 WTO 및 주요국의 직권조사 규정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음

Ⅱ. 주요국의 반덤핑 직권조사 규정 및 운용현황

1. 관련 규정

가. WTO

1) GATT 제6조 반덤핑

-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는 출범당시 불공정한 무역 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채택하지 않았으나 GATT 출범 후 체약국들은 GATT 1947 제6조를 반덤핑관세 최초의 규칙으로 채택하였음¹⁾
- GATT 제6조는 덤핑의 존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기업의 중대한 피해 존재 및 두 요소 간 인과관계가 확인될 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반덤핑제도 집행에 대한 세부사항이 결여되었음
- GATT 제6차 다자무역협상인 케네디 라운드(Kennedy Round)에서 GATT 1947 제6조를 전면 보완하여 1967년 6월 30일 반덤핑 협정(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GATT)을 채택하였음²⁾

1) 수입규제대응센터, http://antidumping.kita.net/import/cope_guide_view.screen?menuid=ntb070102&seq=3&TAB_L=%EB%B0%98%EB%8D%A4%ED%95%91%20%EC%8B%A4%EB%AC%B4%EA%B0%80%EC%9D%B4%EB%93%9C&TAB_M=%EB%B0%98%EB%8D%A4%ED%95%91%EC%A0%9C%EB%8F%84%20%ED%95%B4%EC%84%A4&NUM1=2&NUM2=1(검색일자: 2018. 12. 27)

2) 수입규제대응센터, http://antidumping.kita.net/import/cope_guide_view.screen?menuid=ntb070102&seq=3&TAB_L=%EB%B0%98%EB%8D%A4%ED%95%91%20%EC%8B%A4%EB%AC%B4%EA%B0%80%EC%9D%B4%EB%93%9C&TAB_M=%EB%B0%98%EB%8D%A4%ED%95%91%

- 본 규정은 국제적인 반덤핑코드로 불리며 덤핑 및 피해판정에 절차적 정확성을 기하고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등 GATT 1947 제6조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
- 그러나 미국 의회가 협정내용 중 일부가 자국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적용을 반대하여 첫 반덤핑 협정은 실패함

- GATT 1947 및 1967년 반덤핑 협정은 여전히 덤핑 사실 및 피해유무에 대한 판정, 직권조사를 비롯한 조사 과정, 덤핑마진 산정, 반덤핑관세의 종료기한 등 주요 부분에서 규정이 결여되었거나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각국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였음
- GATT 1947 및 1967년 반덤핑 협정에서는 직권조사에 대한 규정 또한 결여되어 있음

2) WTO 반덤핑 협정(GATT 1994 제6조 이행에 관한 협정)

- 1994년 WTO 체제의 일부로서 덤핑 판정기준, 산업피해 판정, 조사 개시 및 진행, 반덤핑조치, 반덤핑관행위원회의 설치 및 분쟁해결절차 등을 규정하는 새로운 반덤핑 협정을 채택하여 1995년부터 발효함
- GATT 체제하에서는 덤핑 관련 규정이 협정에 참여한 국가만 적용된 반면 WTO 반덤핑 협정은 WTO 회원국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임

- WTO 반덤핑 협정은 제소자격, 구성가격 산정, 소멸시효 기간 등 기존 반덤핑 협정상의 모호한 부분을 보다 구체화하였으며 GATT 협정에는 부재한 직권조사 내용을 다룸³⁾

EC%A0%9C%EB%8F%84%20%ED%95%B4%EC%84%A4&NUM1=2&NUM2=1(검색일자: 2018. 12. 27)
3) 외교통상부, http://www.mofa.go.kr/www/brd/m_3893/down.do?brd_id=N23341&seq=307397&data_tp=A&file_seq=1(검색일자: 2019. 1. 7)

- WTO 반덤핑 협정은 3부 18개조 2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1부로 분류되는 조사 개시 내용은 기본원칙 및 제반규정(제1조-제15조)에서 규정함
- WTO 반덤핑 협정 제5조 조사 개시 및 후속조사에서는 조사신청 당국의 의무 최소 허용수준(de minimis)의 인정, 조사기간 제한 등을 다루며 제5.6조에서 직권 조사 개시에 대해 규정함
 - WTO 반덤핑 협정 제5.6조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국내 산업이나 이를 대표하는 자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서면신청을 접수하지 않고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면 관계당국은 이를 정당화할 수 있도록 제5.2조에 기술된 덤핑, 피해, 인과관계에 관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진행한다고 규정함

〈표 II-1〉 WTO 반덤핑 협정상 직권조사 개시 규정

Article 5. Initiation and Subsequent Investigation

5.6 If, in special circumstances, the authorities concerned decide to *initiate an investigation without having received a written application by or on behalf of a domestic industry for the initiation of such investigation*, they shall proceed only if they have sufficient evidence of dumping, injury and a causal link, as described in paragraph 2, to justify the initiation of an investigation.

자료: 무역위원회, <https://www.ktc.go.kr:20443/uploads/wto/WTO-GATT.pdf>(검색일자: 2019. 1. 7)

- 반덤핑방지관세부과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인 우회덤핑의 경우 WTO 반덤핑 협정에서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우회덤핑의 운영을 명확히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과정에서 각국은 우회덤핑규정에 관한 합의에 실패하여 WTO 반덤핑 협정에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못한 채 각료결정(Minister Decision)으로 반덤핑위원회에 추가협상을 위임하였음

-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중 우회덤핑을 규제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덤켈 초안(Dunkel Draft)이 제시되었으나 국가 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협상은 결렬되었으며 도하개발아젠다(DDA)에서 규정 도입에 대해 여전히 협상 중임
- WTO 반덤핑 협정에서는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원국 정부가 덤핑 조치를 취하는 것을 허용한다고만 규정함

3) GATT 제16조 보조금

- 보조금에 관한 조치는 GATT 1947 제6조와 제16조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나 이들 조항에는 보조금의 정의, 범위, 발동절차 등 구체적 내용이 결여되었음⁴⁾
 - 특정 정부조치가 불법 보조금 교부에 해당하는지 혹은 정부의 정당한 경제개발 정책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신뢰할 만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GATT 회원국 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음
 - 모호한 규정으로 선진국 중심으로 보조금 상계관세를 자국 산업의 보호수단으로 남용하는 사례가 증가하였음
- 이후 개정된 GATT 1979 보조금 협정(Agreement o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Article VI XVI and XXII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of 1979)에서도 보조금 요건, 조치 절차, 보조금 종류를 비롯한 세부규정이 미비하였음⁵⁾
 - GATT 1947 및 1979년 보조금 협정에서는 직권조사에 대한 규정문이 결여되었음

4) 외교통상부, http://www.mofa.go.kr/www/brd/m_3893/view.do?seq=311253&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35(검색일자: 2019. 1. 10)

5) 이효영·엄준현 「주요기간산업 WTO 보조금 분쟁연구」, 『KIEP 연구자료』, 14-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10. 30, p. 4.

4)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은 보조금에 대한 정의를 도입하고 보조금의 종류, 분류, 상계관세부과의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하여 1994년 개정 후 1995년부터 발효되었음
 -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은 11부 32개조 7개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5부 상계조치에서 직권조사에 대해 규정함

-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11조 조사 개시 및 후속조치에서는 조사신청 당국의 의무 최소허용수준(de minimis)의 인정 조사기간 제한 등을 다루며 제11.6조에서 직권조사에 대해 규정함
 -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11.6조에 따르면 특정상황에서 국내 산업이나 이를 대표하는 자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음
 - 서면신청을 접수하지 않고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면 관계당국은 이를 정당화할 수 있도록 제11.2조에 기술된 보조금, 피해, 인과관계에 관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진행한다고 규정함

〈표 II-2〉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상 직권조사 개시 규정

Article. 11 Initiation and Subsequent Investigation

11.6 If, in special circumstances, the authorities concerned decide to *initiate an investigation without having received a written application by or on behalf of a domestic industry for the initiation of such investigation*, they shall proceed only if they have sufficient evidence of the existence of a subsidy, injury and causal link, as described in paragraph 2, to justify the initiation of an investigation.

자료: 무역위원회, <http://www.ktc.go.kr/uploads/wto/WTO-cost.pdf>(검색일자: 2019. 1. 10)

나. 미국

- 미국은 자국법을 근거로 미국 산업에 피해를 입히는 불공정무역 행위인 덤핑 및 피해 여부를 조사할 수 있음
 - 덤핑 등 불공정무역으로 인한 산업피해를 조사하는 것은 미국 내국법을 통해 행정부에 위임·운용되고 있음
 - WTO 협정은 무역구제조치의 운용을 위한 전체적인 골격만 제시할 뿐 조사 개시 등 조사절차상의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각국의 재량에 맡김⁶⁾

- 조사가 개시되는 경로는 두 가지로, 피해기업이 조사를 청원하는 경우와 조사기관의 직권 (self-initiated investigation)으로 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 미국은 덤핑, 보조금, 우회덤핑에 대해 상무부가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조사 과정상 집행기관에 많은 재량권이 부여되는 법체계를 갖추⁷⁾

- 통상에 있어 직권조사가 갖는 의미는 기업의 제소가 없더라도 조사기관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할 수 있고, 직권조사 강화는 무역제재조치가 강화된다는 것을 내포함
 - 직권조사가 강화된다는 것은 관련업계의 청원이 없더라도 집행기관의 재량으로 산업조사를 발동하기 쉬워졌다는 점에서 무역제재조치가 증가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함

- 본 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하에서, 미국의 「관세법」상 직권조사 규정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함

6) 이재민, 『미국 통상법의 이해-무역구제 관련 실무를 중심으로』, 2009. 11, p. 56.

7) 반덤핑과 상계조치는 특정 국가와 품목을 대상으로 함

1) 1930년 「관세법」상 직권조사 규정

- 1930년 「관세법(Tariff Act of 1930)」의 Subtitle IV는 (상계 및 반덤핑관세)장으로, 동장의 Part II의 (반덤핑관세 부과)는 반덤핑과 관련한 규정을 담음⁸⁾
 - 동 법 제702조(반덤핑관세부과)는 총 9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그 내용은 조사시작부터 반덤핑관세 납입까지 일련의 절차에 대한 규정임⁹⁾
 - 동 조문은 제702조(반덤핑관세부과) 총칙규정을 포함해 제702(a)조(덤핑 조사 시작 절차), 제702(b)조(덤핑 예비결정), 제702(c)조(조사의 중단 또는 정지), 제702(d)조(최종결정), 제702(e)조(관세부과), 제702(f)조(추정반덤핑관세와 최종 과세된 예치금간의 차이에 대한 조치), 제702(g)조(반덤핑관세의 조건부 납입), 제702(h)조(단기수명상품에 대한 상품종류의 확정), 제702(i)조(폐지조항) 등으로 구성됨

- 동 법 제702(a)조는 외국업체의 덤핑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관련 법령임¹⁰⁾
 - 법문 내용은 조사 담당기관이 직권으로 덤핑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것으로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음
 - 관련 조문은 유효한 정보를 근거로 집행기관이 관세 부과를 위해 공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의심하는 경우 언제든지 반덤핑관세 조사가 개시된다고 밝힘

8) 「연방법(U.S.C.)」 제19편,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9/chapter-4/subtitle-IV> (검색일자: 2019. 1. 15)

9) 1930년 「관세법」 제702조는 「연방법(U.S.C.)」 제1673조 반덤핑관세 부과에 해당함.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9/chapter-4/subtitle-IV/part-II>(검색일자: 2019. 1. 15)

10) 「연방법(U.S.C.)」 제1673조, 제1673a조 제(a)항 Initiation by administering authority에 해당함

〈표 II-3〉 미국 「관세법」상(Tariff Act of 1930) 직권조사 개시 규정

Procedures for initiating an antidumping duty investigation

(a) Initiation by administering authority

(1) In general

An antidumping duty investigation shall be initiated whenever the administering authority determines, from information available to it, that a formal investigation is warranted into the question of whether the elements necessary for the imposition of a duty under section 1673 of this title exist.

(2) Cases involving persistent dumping

(A) Monitoring The administering authority may establish a monitoring program with respect to imports of a class or kind of merchandise from any additional supplier country for a period not to exceed one year if—

- (i) more than one antidumping order is in effect with respect to that class or kind of merchandise;
- (ii) in the judgment of the administering authority there is reason to believe or suspect an extraordinary pattern of persistent injurious dumping from one or more additional supplier countries; and
- (iii) in the judgment of the administering authority this extraordinary pattern is causing a serious commercial problem for the domestic industry.

(B) Initiation of investigation

If during the period of monitoring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the administering authority determines that there is sufficient information to initiate a formal investigation under this subsection regarding an additional supplier country, the administering authority shall immediately initiate such an investigation.***

(C) Definition

For purposes of this paragraph, the term “additional supplier country” means a country regarding which no antidumping investigation is currently pending, and no antidumping duty order is currently in effect, with respect to imports of the class or kind of merchandise covered by subparagraph (A).

(D) Expeditious action

The administering authority and the Commission, to the extent practicable, shall expedite proceedings under this part undertaken as a result of a formal investigation initiated under subparagraph (B).

자료: 「미 연방법(U.S.C.)」 제1673a조,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9/1673a>(검색일자: 2019. 1. 15)

- 반덤핑관세와 마찬가지로, 1930년 「관세법(Tariff Act of 1930)」 Subtitle IV (상계 및 반덤핑관세)상의 Part I(상계관세 부과)은 상계관세와 관련한 규정을 담고 있음
- 상계관세부과 조문은 총 9개 조항으로,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조항을 제외하면 반덤핑관세 부과 조문과 내용의 구성이 동일함¹¹⁾
- 동 조문은 제701조(상계관세의 부과) 총칙규정을 포함해 제701.a조(상계관세 조사시작 절차), 제701.b조(보조금지급 여부 예비결정), 제701.c조(조사의 중단 또는 정지), 제701.d조(최종결정), 제701.e조(관세부과), 제701.f조(추정상계관세와 최종 과세된 예치금 간 차이에 대한 조치), 제701.g조(수출입은행 일탈 효력), 제701.h조(상계관세의 조건부 납입) 등으로 구성됨
 - 미국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조항은 상계관세의 평가 또는 잠정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출입은행이 미국 판매업자(수출자)에게 금융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임¹²⁾
- 동 법 제701(a)조는 외국 업체의 보조금 지급에 대한 직권조사 관련 법령임¹³⁾
- 법문 내용은 조사 담당기관이 직권으로 보조금 지급 여부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것으로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음
- 관련 조문은 유효한 정보를 근거로 집행기관이 관세 부과를 위해 공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의심하는 경우 언제든지 상계관세 조사가 개시된다고 밝힘
 - 외국의 생산자와 연계된 생산자, 수입인인 생산자 등은 신청이 불가능한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함

11) 1930년 「관세법」 제701조는 「연방법(U.S.C.)」 제1671조 상계관세부과에 해당함.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9/chapter-4/subtitle-IV/part-I>(검색일자: 2019. 1. 15)

12) 「연방법(U.S.C.)」 제1671g조,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9/1671g>(검색일자: 2019. 1. 15)

13) 「연방법(U.S.C.)」 제1671조, 제1671a조 제(a)항 Initiation by administering authority에 해당함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9/1671a>(검색일자: 2019. 1. 15)

- 직권조사 「시행령(C.F.R.)」이 별도로 존재하나 그 내용은 「연방법(1930년 관세법)」과 유사함¹⁴⁾
 - 「연방법(United States Codes, 이하 U.S.C.)」이 직권조사에 대한 법률적 규정이 라면, 구체적인 조치는 직권조사 관련 「시행령(Code of Federal Regulations, 이하 C.F.R.)」을 통해 운용함¹⁵⁾

2) 직권조사 「무역이행법(Self-Initiation Trade Enforcement Act of 2018)」

- 현재 직권조사 강화를 위한 직권조사 「무역이행법」이 발의됨¹⁶⁾
 - Gary Peters 상원의원에 의해 법안이 발의되었고 동 법안은 의회에서 두 번 회람, 재무 위원회에 회부됨
- 동 법안의 목적은 상무부의 직권규정 활성화와 중소기업을 위한 무역구제지원 강화임
 - 발의안은 미국 상무부는 조사 직권규정이 있으나 이를 거의 활용하고 있지 않다고 밝힘

14) 「시행령(C.F.R.)」 제351.201조 전문: (a)Introduction.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s may be initiated as the result of a petition filed by a domestic interested party or at the Secretary's own initiative. This section contains rules regarding the actions the Secretary will take when the Secretary self-initiates an investigation. (b) In general. When the Secretary self-initiates an investigation under section 702(a) or section 732(a) of the Act, the Secretary will publish in the Federal Register notice of "Initiation of Antidumping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In addition, the Secretary will notify the Commission at the time of initiation of the investigation, and will make available to employees of the Commission directly involved in the proceeding the information upon which the Secretary based the initiation and which the Commission may consider relevant to its injury determination. (c) Persistent dumping monitoring. To the extent practicable, the Secretary will expedite any antidumping investigation initiated as the result of a monitoring program established under section 732(a)(2) of the Act. <https://www.law.cornell.edu/cfr/text/19/351.201>

15) U.S.C.는 미국 연방 법률을 하나로 모은 법전으로 총 50개 주제에 따라 편(Title)으로 편성됨. 「C.F.R.」은 연방규정집으로 연방행정부가 공포한 행정명령을 취합해 발행되는 연간 규정집임. 자세한 사항은 신영수(2010) p. 15를 참조

16) 미 의회 홈페이지, <https://www.congress.gov/bill/115th-congress/senate-bill/2427/all-info>(검색 일자: 2019. 1. 15)

- 직권규정을 활용해 산업피해가 발생해도 데이터 수집 같은 제소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함
 - 특히 농업·제조업·부품업·제지업 분야의 중소기업을 언급하며 불공정관행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덤핑피해를 받고 있다고 보고함

- 법안은 덤핑조사기관인 상무부 산하 ITA의 덤핑조사 권한을 강화하자는 것을 골자로 함
 - 이때 덤핑조사 권한 강화는 기업이 제소하지 않아도 집행기관이 덤핑조사를 개시해 미국의 기업, 특히 중소기업을 보호하자는 것임

- 구체적으로 1930년 「관세법(19 U.S.C. 1677)」 부속서 D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전문은 다음과 같음
 - (a) 개관 - 국제무역관리청(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에는 다음을 담당하는 전담부서(Task Force)가 설치되어 있음
 - (1) 실질적 피해를 유발하거나 국내 사업에 실질적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대응가능한 덤핑 및 보조금을 식별함
 - (2) 제702조(a) 및 제732(a)에 조사 착수와 관련해 국제무역담당 차관에게 권고함
 - (3) 위 두 항의 수행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함
 - (b) 의무 - (a)항에 따른 전담부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해야 함
 - (1) 실질적 피해 또는 위협을 유발하는 보조금 및 덤핑 사례를 식별하기 위해 무역흐름, 정부 데이터, 가격변동, 국내 산업 및 시장상황을 모니터링 함
 - (2) 탈세 및 우회 등의 외국 정부 보조금에 대한 배경을 조사함
 - (3) 미국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를 우선적으로 처리함
 - (c) 협의 - (a)항에 따른 전담부서가 책임을 수행할 때 감당할 수 있는 보조금 및 덤핑과 관련하여 미국의 업계와 협의해야 함
 - (d) 임상적 개정 - 1930년 「관세법」 제7조의 목차는 섹션783에 관련 항목 뒤에 삽입함으로써 수정됨

〈표 II-4〉 직권조사 「무역이행법」 발의안 전문(S.2427)

Self-Initiation Trade Enforcement Act of 2018

To establish a *task force to identify countervailable subsidies and dumping*.

Be it enacted by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Congress assembled,

SECTION 1. Short title.

This Act may be cited as the *“Self-Initiation Trade Enforcement Act of 2018”*.

SEC. 2. Task force to identify countervailable subsidies and dumping.

(a) In general.—Subtitle D of title VII of the Tariff Act of 1930 (19 U.S.C. 1677 et seq.) is amended by adding at the end the following:

“SEC. 784. Task force to identify countervailable subsidies and dumping.

“(a) In general.—There is established, in the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a task force to be responsible for—*

“(1) identifying countervailable subsidies and dumping that are causing material injury or threaten to cause material injury to a domestic industry;

“(2) making recommendations to the Under Secretary of Commerce for International Trade with respect *to initiating investigations under sections 702(a) and 732(a)*; and

“(3) conducting research relating to carrying out paragraphs (1) and (2).

“(b) Duties.—In carrying out the responsibilities of the task force under subsection (a), the task force shall—

“(1) monitor trade flows, government data, price fluctuations, domestic industry and market conditions, and all relevant available business information to identify potential cases of countervailable subsidies and dumping that are causing material injury or threaten to cause material injury to a domestic industry;

“(2) conduct background research on foreign pricing practices and foreign government subsidies, including duty evasion and circumvention; and

“(3) *prioritize cases that affect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in the United States.*

“(c) Consultations.—In carrying out the responsibilities of the task force under subsection (a), the task force shall consult with industries in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countervailable subsidies and dumping.”.

(d) Clerical amendment.—The table of contents for title VII of the Tariff Act of 1930 is amended by inserting after the item relating to section 783 the following:

자료: 미 의회, <https://www.congress.gov/bill/115th-congress/senate-bill/2427/text>(검색일자: 2019. 1. 15)

3) 우회덤핑 직권조사 규정

- 미국은 반덤핑조치를 회피하려는 우회덤핑에 대해 다음의 규정을 두어 우회덤핑을 방지하고 있음¹⁷⁾
 - 1930년 「관세법(Tariff Act of 1930)」 제781조 제(a)항~제(f)항까지 총 6개 조항에서 규정하며, 그 내용은 우회덤핑의 유형과 결정에 관한 것임¹⁸⁾
 - 우회덤핑의 유형별 우회덤핑 요건, 판정, 고려요소 등에 대한 규정으로 제(a)항(수입국 우회), 제(b)항(제3국 우회), 제(c)항(사소한 변경이 가해진 제품), 제(d)항(추후 개발된 제품)임
 - 제(e)항은 우회덤핑 관련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내용으로 상무부는 우회덤핑 판정을 위해 위원회 및 소관기관(Administering Authority)의 제언을 참고해야 하며, 판정 사실을 위원회에 고지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함
 - 제(f)항은 소관기관 결정에 대한 기간제한 규정임
- 덤핑과 마찬가지로, 우회덤핑 역시 국내 관련 산업 이해관계인 외에, 상무부 직권으로 조사 개시가 가능함
 - 「우회덤핑방지법」에 직권조사가 가능하다는 조문은 없으나, 「우회덤핑방지법」이 「반덤핑법」의 절차를 따르므로 1930년 「관세법」 제781조(U.S.C. 1677j) 제(b)항, 「시행령(CFR)」 351.225(h)에 근거해 직권조사가 가능함¹⁹⁾
 - 드물기는 하나 상무부는 직권으로 우회덤핑 조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조사 개시 여부 결정 후 공시 및 수출국 정부와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함

17) 우회덤핑(circumvention dumping)은 반덤핑조치가 빈번함에 따라 반덤핑관세 적용대상물품의 생산 및 선적방법 등을 변경함으로써 반덤핑관세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임

18) 연방법(U.S.C.) 제1677j조 반덤핑과 상계관세명령 우회 방지(Prevention of circumvention of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에 해당함.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9/1677j>(검색일자: 2019. 1. 15)

19) 우회덤핑이 반덤핑법에 따라 직권조사 가능하다는 점은 미 연방 우회덤핑 직권조사 사례의 미 연방관보(83 FR 4225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18/08/21/2018-17784/uncovered-innerspring-units-from-the-peoples-republic-of-china-preliminary-affirmative-determination>(검색일자: 2019. 1. 15)

- 우회덤핑으로 판정되면 기존의 반덤핑조치가 적용되는데 미국법상 우회덤핑 유형별 정의와 요건은 다음과 같음²⁰⁾
- (a) 수입국 우회(Importing Country Circumvention)는 수출국이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물품의 부품을 미국으로 수출하여 현지에서 조립·완성하여 반덤핑조치를 회피하는 경우로,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면 물품의 부품에도 기존의 반덤핑조치가 적용됨
 - 미국에서 판매되는 물품이 기존 반덤핑관세의 대상이 되는 물품과 동종인 경우
 - 반덤핑관세 조치의 적용을 받는 국가로부터 수입된 부품으로 조립·완성된 경우
 - 미국에서의 조립·완성 공정이 사소하거나 중요하지 않은(minor or insignificant) 경우
 - 반덤핑관세 조치 대상국으로부터 수입된 부품의 가치가 제품의 전체 가치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경우
 - (b) 제3국 우회(Third Country Circumvention)는 반덤핑관세 부과대상인 물품의 부품을 제3국으로 수출한 뒤 조립·완성시켜 완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이며,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면 기존의 반덤핑조치가 적용됨
 -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이 반덤핑관세부과 대상국에서 생산하는 동종 물품인 경우
 - 미국으로 수입되기 전에 반덤핑관세 적용 대상 물품이나 그 국가의 물품을 사용하여 제3국에서 조립·완성된 경우
 - 조립·완성 공정이 사소하거나 중요치 않은 경우
 - 반덤핑관세부과 대상국에서 생산된 부품의 가치가 미국으로 수출된 물품의 전체 가치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 (c) 사소한 변경이 가해진 물품(Slightly Altered Products)은 기존 반덤핑관세 적용 대상 물품의 외관 또는 형태를 미세하게 변경한 경우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 우회덤핑 여부를 판정함
 - 전반적인 물리적 성질, 최종구매자의 기대, 최종용도, 거래 및 광고경로, 제품의 전체 가치 대비 변경비용 등

20) 정재호·이민선·양지영, 『주요국의 우회덤핑방지제도 비교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12, pp. 35~39.

- (d) 추후 개발된 제품(Later Developed Products)은 반덤핑조사가 개시된 이후 개발된 경우로, 다음 사항을 고려해 우회덤핑 여부를 판정함
 - 물리적 성질, 최종구매자의 기대, 최종용도, 유통경로, 광고 및 진열방식 등

다. 중국

1) 「반덤핑조례」상 직권조사 규정

- 중국의 덤핑 및 보조금에 대한 직권조사 규정은 두 차례 개정을 거쳐 운영됨
 - 중국의 직권조사 관련 최초 규정은 1997년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례를 통해 운영되었음
 - 2001년 개정된 조례는 덤핑과 보조금을 분리하여 「반덤핑조례」과 반보조조례를 각각 채택함
 - 2001년 WTO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하면서 WTO 규정과의 합치성을 높인 개정안을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으로 통과시키고 이를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 이후 2004년에 「반덤핑조례」과 반보조조례는 조사 관할기관의 변경안을 담아 개정함
 - 대외경제무역합작부와 경제무역위원회가 관할하던 조사를 모두 상무부 관할로 통합한 것이 주요 내용임
- 관련 법령인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조례」와 「중화인민공화국 반보조금조례」는 상무부가 덤핑 및 보조금 관련 충분한 증거로 피해 및 양자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직권조사가 가능하다고 규정함²¹⁾

21) 中華人民共和國反傾銷條例(Anti-dumping Regul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01년 11월 26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28호로 공포, 2004년 3월 31일 국무원 결정으로 개정, http://www.exportcenter.go.kr/clms/service/law/lawFullScreen.do?law_seq=3888&history_seq=3271&key=%25EC%25A4%2591%25ED%2599%2594%25EC%259D%25B8%25EB%25AF%25BC%25EA%25B3%25B5%25ED%2599%2594%25EA%25B5%25AD%25EB%25B0%2598%25EB%258D%25A4%25ED%2595%2591%25EC%25A1%25B0%25EB%25A1%2580(검색일자: 2019. 1. 15)

〈표 II-5〉 「중국 반덤핑조례(中华人民共和国反倾销条例)」 제18조

「중국 반덤핑조례(中华人民共和国反倾销条例)」 제18조

특별상황에서 대외경제무역부가 반덤핑 조사의 서면 신청서를 접수하지 못하였으나 덤핑과 손해 및 양자간에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가경제무역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후 입안 조사를 결정할 수 있다. 이하 대외경제무역부와 국가경제무역위원회를 조사기관이라고 통칭한다.

자료: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29호, http://www.exportcenter.go.kr/clms/service/law/lawFullScreen.do?law_seq=3889&history_seq=3272&key=%25EB%25B0%2598%25EB%25B3%25B4%25EC%25A1%25B0%25EC%25A1%25B0%25EB%25A1%2580(검색일자: 2019. 1. 15)

- 「반덤핑조례」와 「반보조금조례」에 대한 세부 시행세칙도 있으나, 그중 직권조사의 내용을 담은 시행세칙은 없음
 - 「반덤핑조례」에 근거한 세부 시행세칙은 다음의 11개임
 - 반덤핑조사 공청회 잠정규칙
 - 반덤핑조사 입안 잠정규칙
 - 반덤핑조사 현지실사 잠정규칙
 - 반덤핑 설문조사 잠정규칙
 - 반덤핑조사 표본추출 잠정규칙
 - 반덤핑 정보공개 잠정규칙
 - 반덤핑조사 공개정보열람 잠정규칙
 - 반덤핑 가격약속 잠정규칙
 - 반덤핑 새수출상 재심 잠정규칙
 - 반덤핑관세환급 잠정규칙
 - 반덤핑제품 범위조정절차 잠정규칙
 - 「반보조금조례」에 근거한 세부 시행세칙은 다음의 4개임
 - 반보조금 공청회 잠정규칙
 - 반보조금 조사입안 잠정규칙
 - 반보조금 설문조사 잠정규칙
 - 반보조금조사 현지실사 잠정규칙

2) 우회덤핑 직권조사 규정

- 중국의 우회덤핑 방지 규정은 「반덤핑조례」 제55조에 근거하며 전문은 다음과 같음²²⁾
 - 「반덤핑조례」 제55조 전문: 상무부는 적당한 조치를 통하여 반덤핑조치 회피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 중국의 우회덤핑 방지 규정은 우회덤핑 발생 시 상무부가 적정 조치하는 권한에 대해 명시했으나 우회덤핑 조사에 대한 집행기관의 직권조사 가능 여부는 언급이 없음
 - 미국의 우회덤핑 규정은 우회덤핑 유형, 요건, 조사절차 등을 규정하고 직권조사 가능하다고 명문화함
 - 이에 반해, 중국의 관련 규정은 우회덤핑 행위에 대해 조치할 수 있다는 원칙적인 규정만 두어 구체성이 결여됨

라. EU

1) 기존 반덤핑 규정상의 직권조사 규정

- EU 최초 반덤핑 규정은 Council Regulation(EC) 384/96으로 관련 산업 대표, 자연인, 법인 등이 EU집행위원회(commission; 이하 EU집행위원회)에 요청하거나 회원국에 건의하면 회원국이 EU집행위원회에 반덤핑 조사 개시를 요청하도록 규정함
 - 요청이 없을 시 회원국은 충분한 덤핑 증거와 해당산업 피해 내용을 즉시 EU집행위원회에 전달하여 조사 개시를 위해 논의하도록 규정함

22) 「반덤핑조례」 제55조

- 그러나 Council Regulation(EC) 384/96 제5조 제6항에서는 특별한 상황일 경우 서면신청 없이 덤핑 및 피해에 대한 충분한 증거와 관련성을 입증한다면 당국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함
 - 특히 EU 첫 반덤핑 규정은 WTO 반덤핑 직권조사 개시 규정을 거의 동일하게 반영함
 - 최초 반덤핑 규정 Council Regulation(EC) 384/96은 이후 2018년까지 약 13회 개정되었으나 2014년까지 조사 개시 주체에 대한 별도의 개정은 없었음
 - 개정된 규정은 Council Regulation(EC) 2331/96, Council Regulation(EC) 905/98, Council Regulation(EC) 2238/2000, Council Regulation(EC) 1972/2002, Council Regulation(EC) 461/2004, Council Regulation(EC) 2117/2005, Council Regulation(EC) 1225/2009, Regulation(EU) 765/2012, Regulation(EU) 1168/2012, Regulation(EU) 37/2014, Regulation(EU) 2016/1036, Regulation(EU) 2017/2321, Regulation(EU) 2018/825임

〈표 II-6〉 WTO 반덤핑 협정 및 Council Regulation(EC) 384/96상 직권조사 개시 규정

WTO 반덤핑 협정 Article 5. Initiation and Subsequent Investigation	Council Regulation(EC) 384/96 Article 5. Initiation of proceedings
Article 5.6: If, in special circumstances, the authorities concerned decide to <i>initiate an investigation without having received a written application by or on behalf of a domestic industry for the initiation of such investigation</i> , they shall proceed only if they have sufficient evidence of dumping, injury and a causal link, as described in paragraph 2, to justify the initiation of an investigation.	Article 5(6): If in special circumstances, it is decided to <i>initiate an investigation without having received a written complaint by or on behalf of the Community industry for the initiation of such investigation</i> , this shall be done on the basis of sufficient evidence of dumping, injury and a causal link, as described in paragraph 2, to justify such initiation.

자료: 무역위원회, <https://www.ktc.go.kr:20443/uploads/wto/WTO-GATT.pdf> 및 EU집행위원회,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1996R0384&from=EN>(검색일자: 2019. 1. 7)

2) 반덤핑 규정 개정에 따른 직권조사 규정

- 2014년 개정된 Regulation(EU) 37/2014을 통해 조사 개시 요청 주체를 지역사회(Community)에서 연합(Union)으로 변경하였으며 EU집행위원회가 조사 개시 결정에 대한 정보를 회원국에 제공해야 함을 추가 규정함

〈표 II-7〉 Council Regulation(EC) 384/96 및 Regulation(EU) 37/2014상 직권조사 개시 규정

Council Regulation(EC) 384/96 Article 5. Initiation of proceedings	Regulation(EU) 37/2014 Article 5. Initiation of proceedings
Article 5(6): If in special circumstances, it is decided to initiate an investigation without having received a written complaint by or on behalf of the Community industry for the initiation of such investigation, this shall be done on the basis of sufficient evidence of dumping, injury and a causal link, as described in paragraph 2, to justify such initiation.	Article 5(6): If in special circumstances it is decided to initiate an investigation without having received a written complaint by or on behalf of the <u>Union</u> industry for the initiation of such an investigation, this shall be done on the basis of sufficient evidence of dumping, injury and a causal link, as described in paragraph 2, to justify such initiation. <i>The Commission shall provide information to the Member States once it has determined the need to initiate such investigation</i>

자료: EU집행위원회,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14/january/tradoc_152063.amend-procedures.en.L18-2014.pdf(검색일자: 2019. 1. 10)

- 이후 개정된 Regulation(EU) 2016/1036에서는 직권조사 개시 주체를 집행위원회(Commission)로 명확히 표기함
 - 상대국의 보복 위협으로 해당 EU 산업이 조사 개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제소자 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EU집행위원회의 직권조사 권한 확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개정임²³⁾

23) KDI, <https://eiec.kdi.re.kr/publish/nara/world/view.jsp?idx=10886>(검색일자: 2019. 1. 9)

〈표 II-8〉 Regulation(EU) 37/2014 및 Regulation(EU) 2016/1036상 직권조사 개시 규정

Regulation(EU) 37/2014 Article 5. Initiation of proceedings	Regulation(EU) 2016/1036 Article 5. Initiation of proceedings
Article 5(6): If in special circumstances it is decided to initiate an investigation without having received a written complaint by or on behalf of the Union industry for the initiation of such an investigation...(중략)	If, in special circumstances, <i>the Commission decides</i> to initiate an investigation without having received a written complaint by, or on behalf of, the Union industry for the initiation of such an investigation...(중략)

자료: EU집행위원회,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17/december/tradoc_156470.amend.en.L338-2017.pdf(검색일자: 2019. 1. 10)

- EU는 최근 Regulation(EU) 2016/1036을 개정한 규정인 Regulation(EU) 2017/2321에 따라 제2조 6a를 신설하여 시장경제국과 비시장경제국 개념 대신 중대한 왜곡(Significant distortion) 여부에 따라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힘²⁴⁾
 - 개정의 구체적 목적은 5가지임. 중국과 같이 비시장경제국 지위가 종결되는 국가에 대한 대응, EU 무역구제제도의 지속적인 효과성, 중국 및 다른 비시장경제국의 계속적인 왜곡에 대한 대응, 덤핑수입품 피해에 대한 구제, 무역상대국과의 강한 유대관계 유지²⁵⁾
 - 중대한 왜곡 발생의 판단 요소는 국영기업의 시장점유, 가격 및 비용에서 국가가 개입이 가능한지, 국가의 정책이 국내공급자에게 유리한지, 「파산법」, 「기업법」, 「재산법」 등의 존재 여부 및 급여비용 왜곡, 금융 왜곡 등이 있음
- Regulation(EU) 2017/2321 제1조(e)에서는 직권조사와 관련하여 집행위가 중대한 왜곡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발견 시 이에 근거하여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24) 강민지, 「미국과 EU의 무역구제조치 관련 법 개정과 시사점」, 『KIEP 기초자료』, 18-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3. 20, p. 24.

25) EU집행위원회,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16/november/tradoc_155080.pdf (검색일자: 2019. 1. 10)

규정함

- EU 회원국 기업이 조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중대한 왜곡이 발견된다면 EU집행위원회의 직권심사가 가능한 바 특정 산업분야나 국가를 목표로 한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함²⁶⁾
 - 반덤핑규칙 제2조 6a(c)에 따라 EU집행위원회는 중대한 왜곡이 발생하는 국가와 산업분야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해야 하며 이 보고서에 근거하여 조사를 개시할 수 있음²⁷⁾
- 특히 중대한 왜곡은 WTO 협정상 언급되지 않은 부분이므로 EU집행위원회의 권한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II-9〉 Regulation(EU) 2017/2321상 직권조사 개시 규정

Regulation(EU) 2017/2321 Article 1. (e)

Where the Commission finds that there is sufficient evidence, pursuant to Article 5(9), of *significant distortions within the meaning of point (b) of this paragraph and decides to initiate an investigation* on that basis, the notice of initiation shall specify that fact. The Commission shall collect the data necessary to allow the construction of the normal value in accordance with point (a) of this paragraph...(중략)

자료: EU집행위원회,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17/december/tradoc_156470.mend.en.L338-2017.pdf(검색일자: 2019. 1. 10)

3) 우회덤핑²⁸⁾

- EU는 1980년대 중반 일본과 EU 간 ‘스크루드라이버 사건’으로 알려진 우회덤핑 논의가 불거짐에 따라 1987년 우회덤핑 방지 규정 Council Regulation(EEC) 1761/87을 도입하였음 ²⁹⁾

26) 강민지, 「미국과 EU의 무역구제조치 관련 법 개정과 시사점」, 『KIEP 기초자료』, 18-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3. 20, p. 26.

27) Regulation(EU) 2017/2321 Article. 6a(c)

28) 정재호 외, 『주요국의 수입규제제도 비교연구』, 2018. 6, pp. 104~105.

29) 정재호 외, 『주요국의 우회덤핑방지제도 비교연구』, 2014. 12, p. 44.

- 일본 업체가 스크루드라이버(screwdriver)만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단순 작업을 위해 EC 역내에 조립공장을 설립하였고, 반덤핑관세 부과대상이 아닌 부품을 수입 후 조립하여 판매하였음
- 역외의 기업이 역내에서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현지부품 조달비율이 40% 미만인 제품은 완성품과 같은 비율로 덤핑관세를 부과하였으나 본 규정은 GATT 패널이 내국민 대우 위반으로 결정하였음³⁰⁾
 - 스크루드라이버 관련 규정들은 규칙 Council Regulation(EEC) 2423/88의 제 13.10조에서 재도입되었으나 일본 정부는 동 규정의 GATT 협정 위반을 이유로 제소하여 1990년대부터 우루과이라운드 종결까지 적용되지 않았음
- GATT 협정과의 충돌문제 등 개정을 거친 후 우회덤핑 규정으로 1996년 Council Regulation(EC) 384/96이 도입되었고, Council Regulation(EC) 461/2004로 개정되며 공동체 내부와 외부에서 발생하는 우회관행을 구별함
- 현재 EU는 반덤핑 규정 Regulation(EU) 2016/1036 제13조에 우회덤핑(Circumvention)에 관한 조사 절차, 요건, 부과 조치 등에 대해 규정함
 - Regulation(EU) 2018/825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나 조사주체에 대한 개정은 없었음
- 우회덤핑 조사는 우회덤핑으로 판정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충분한 증거에 근거하여 EU집행위원회의 직권(initiative of the Commission) 또는 회원국이나 이해관계당사자의 요청(request of a Member State or any interested party)에 따라 개시됨³¹⁾
 - 우회덤핑 조사는 각 회원국 관세당국의 지원을 받아³²⁾ EU집행위원회가 수행하며 9개월 내에 종결해야 함

30) Report by the Panel adopted on 16 May 1990(L/6657 - 37S/132)

31) Regulation(EU) 2018/825 Article 13(3)

32) Regulation(EU) 2016/1036 Article 13(3)

- 우회덤핑 부과 요건은 ① 여러 종류의 우회덤핑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② EU 역내 또는 제3국에서 이루어지는 조립공정에 대한 특별 요건으로 분류되며 요건만족 시 반덤핑 관련 조치는 해당 물품에 확대되어 부과됨³³⁾
 - 우회덤핑 관련 조치는 제3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동종 상품, 사소한 변형이 발생한 동종 상품, 또는 동종 상품의 부품, 특정기업으로부터의 수입에도 적용됨

- 여러 종류의 우회덤핑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음³⁴⁾
 - 제3국과 EU 간 또는 반덤핑 조치 대상국 내 개별 기업과 EU 간 교역 형태의 변화가 발생해야 함
 - 교역 형태의 변화가 하나 이상의 관행(Practice), 공정(Process) 또는 작업(Working)으로 인한 것이어야 함
 - 관행, 공정, 작업의 범위는 제품의 사소한 변화, 환적, 낮은 반덤핑관세 혜택을 받은 기업을 통한 수출, EU 또는 제3국에서 조립하는 행위 등을 포함함
 - 관행, 공정 또는 작업이 변화한 근거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 이외에 적합한 사유나 경제적 타당성을 찾을 수 없어야 함
 - 가격 또는 수량의 측면에서 부과되었던 반덤핑관세의 무역구제 효과가 훼손되고 있음이 확인되어야 함
 - 원심에서 확립된 정상가격과 비교하여 수출가격이 최근 재심사 시 확립된 정상가격 이하라는 덤핑의 증거가 존재해야 함

- EU 역내 또는 제3국에서 조립공정이 이루어질 시 특별규정이 적용되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우회덤핑이라고 판정함³⁵⁾
 - 원심 조사 개시 전후로 조립공정이 시작되었거나 혹은 조립공정이 상당한 수준으로 가동되어야 함

33) Regulation(EU) 2016/1036 Article 13(1)

34) Regulation(EU) 2016/1036 Article 13(1)

35) Regulation(EU) 2016/1036 Article 13(2)

- 조치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된 부품 가치가 총부품 가치의 60% 이상이거나 EU 또는 제3국 내 조립 공정에서 창출된 부가 가치의 25% 미만이어야 함
- 조립된 제품의 가격 또는 수량 측면에서 기존 반덤핑관세의 무역구제 효과가 훼손되고 있음이 확인되어야 하며 기존 조치대상제품의 정상가격과 비교하여 덤핑이 존재해야 함

4) 기존 상계관세 규정상의 직권조사 규정

- EU는 반덤핑제도와 상계관세제도를 분리하지 않고 운영해왔으나 1995년 WTO 출범에 따라 두 제도를 분리하여 운영함³⁶⁾
- EU의 최초 상계관세 규정은 Council Regulation(EC) 2026/97로 관련 산업 대표, 자연인, 법인 등이 EU집행위원회에 직접 요청하거나 회원국에 건의하면 회원국이 EU집행위원회에 상계관세 조사 개시를 요청하도록 규정함
 - 요청이 없을 시 회원국은 충분한 상계가능 보조금에 대한 증거와 해당 산업 피해에 대한 내용을 즉시 EU집행위원회에 전달하여 조사 개시를 논의하도록 규정함
- 그러나 특별한 상황의 경우 서면신청 없이 EU집행위원회에서 보조금 및 피해에 대한 충분한 증거와 관련성을 입증한다면 당국이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함
 - 특히 EU는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상 직권조사 개시 규정을 거의 동일하게 사용함

36) 이환규, 「EU의 무역구제제도 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0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11, pp. 359~363.

〈표 II-10〉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및 Council Regulation(EC) 2026/97상
직권조사 개시 규정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Article 11. Initiation and Subsequent Investigation	Council Regulation(EC) 2026/97 Article 10. Initiation of proceedings
<p>11.6 If, in special circumstances, the <u>authorities concerned decide to initiate an investigation without having received a written application by or on behalf of a domestic industry for the initiation of such investigation</u>, they shall proceed only if they have sufficient evidence of the existence of a subsidy, injury and causal link, as described in paragraph 2, to justify the initiation of an investigation.</p>	<p>10(10) If, in special circumstances, the <u>Commission decides to initiate an investigation without having received a written complaint by or on behalf of the Community industry for the initiation of such investigation</u>, this shall be done on the basis of sufficient evidence of the existence of countervailable subsidies, injury and causal link, as described in paragraph 2, to justify such initiation.</p>

자료: 무역위원회, <http://www.ktc.go.kr/uploads/wto/WTO-cost.pdf> 및 EU집행위원회, <https://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ONSLEG:1997R2026:20040320:EN:PDF>(검색일자: 2019. 1. 10)

- 최초 상계관세 규정 Council Regulation(EC) 2026/97은 이후 2018년까지 약 7회 개정됐으며 2014년까지 조사 개시 주체에 대한 개정은 없었음
- 개정규정은 Council Regulation(EC) 1973/2002, Council Regulation(EC) 461/2004, Council Regulation(EC) 597/2009, Regulation(EU) 37/2014, Regulation(EU) 2016/1037, Regulation(EU) 2017/2321, Regulation(EU) 2018/825 임

5) 상계관세 규정 개정에 따른 직권조사 규정

- 2014년 개정된 Regulation(EU) 37/2014를 통해 조사 개시 요청 주체를 지역사회(Community)에서 연합(Union)으로 변경하였으며 EU집행위원회가 조사 개시 결정에 대한 정보를 회원국에 제공해야 함을 추가 규정함
- 또한 규정 번호를 Article 10(10)에서 Article 10(8)로 변경함

〈표 II-11〉 Council Regulation(EC) 2026/97 및 Council Regulation(EU) 37/2014상 직권조사 개시 규정

Council Regulation(EC) 2026/97 Article 10. Initiation of proceedings	Council Regulation(EU) 37/2014 Article 10. Initiation of proceedings
<p>10(10) If, in special circumstances, the Commission decides to initiate an investigation without having received a written complaint by or on behalf of the Community industry for the initiation of such investigation, this shall be done on the basis of sufficient evidence of the existence of countervailable subsidies, injury and causal link, as described in paragraph 2, to justify such initiation.</p>	<p><i>Article 10(8)</i> If, in special circumstances, the Commission decides to initiate an investigation without having received a written complaint by or on behalf of the <i>Union industry</i> for the initiation of such an investigation, this shall be done on the basis of sufficient evidence of the existence of countervailable subsidies, injury and causal link, as described in paragraph 2, to justify such initiation. The <i>Commission shall provide information to the Member States once it has determined the need to initiate such an investigation.</i></p>

자료: 무역위원회, <https://www.ktc.go.kr:20443/uploads/wto/WTO-GATT.pdf> 및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1996R0384&from=EN>(검색일자: 2019. 1. 7)

마. 우리나라

1) 덤핑방지관세 규정상 조사 개시 주체

- 우리나라가 GATT에 가입한 직후 1968년 「관세법」 제10조에서 부당염매방지관세라고 하여 덤핑방지관세 성격의 규정을 도입하였으며³⁷⁾ 1984년 개정된 「관세법」부터 본격적인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법규체계가 갖추어짐³⁸⁾

37) 안덕근, 『불공정 무역행위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 연구소, 2012. 6. 7, p. 3.

38) 무역위원회, 『30년사 공정무역 질서 확립 30년을 담다』, 2017. 9, p. 103.

- 덤핑방지관세는 「관세법」 제51조-제56조, 「관세법 시행령」 제58조-제71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20조에서 규정함
- 우리나라 「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에서는 국내 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한 경우에 조사 결과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함
 - 「관세법 시행령」 제59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에 따라 제51조 규정으로 실질적 피해를 받은 국내 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덤핑방지관세의 법규체계가 갖추어진 1984년, WTO 반덤핑 협정이 발효된 1995년 및 최근 두 번³⁹⁾의 「관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부과 주체가 변경되었으나 직권에 대한 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임
 - 1984년에는 이해관계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부장관에게 조사 개시를 요청하도록 규정함
 - 1995년에는 이해관계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조사 개시를 요청하도록 규정함
 - 2006년에는 이해관계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조사 개시를 요청하도록 규정함
 - 2009년에는 이해관계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사 개시를 요청하도록 규정함
- 부과 주체인 기획재정부장관이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하는 것이 아니며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다는 측면에서 직권으로 판단하기에는 규정상 모호

39) 2016년의 일부 개정은 조사 시 고려 요소에 대한 개정으로 조사 주체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아 2006년과 2009년 개정을 살펴봄

한 부분이 있음

- 반덤핑 관련 조사를 담당하는 무역위원회 또한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없음
 - 무역규범 위반 혹은 불공정무역행위는 무역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법에 명시하였으나 반덤핑은 해당 내용이 없음
 - 현재까지 주무부장관의 부과요청으로 조사 개시한 건수는 전무함
- 반덤핑방지관세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제3국을 통해 수출하는 행위인 우회덤핑은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직권 개념을 조사할 수 없음
- 단 「관세법 시행규칙」,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등에서 원산지를 위장한 국내 수입자 제재만 규정함

2) 상계관세 규정상 조사 개시 주체

- 우리나라는 1967년 11월 「관세법」에 상계관세 관련 내용을 도입하였으나 상계관세 부과요건만 규정하여 1981년 12월 「관세법」 개정에 따라 부과신청, 보조금 지급사실, 조사기간, 약속제의 및 수락, 조사종결, 잠정조치 등의 내용을 도입하였음
-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57조-제62조, 「관세법 시행령」 제72조-제84조, 「관세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 상계관세 관련 내용을 규정함
- 우리나라 「관세법」 제57조(상계관세의 부과대상)에서는 국내 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한 경우에 조사 결과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상계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함
- 「관세법 시행령」 제73조(상계관세의 부과요청)에 따라 실질적 피해를 받은 국내 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상계관세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상계관세의 법규체계가 갖추어진 1982년,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이 발효된 1995년과 최근 두 번⁴⁰⁾의 「관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부과 주체가 변경되었으나 직권 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임
 - 1982년에는 이해관계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부장관에게 조사 개시를 요청하도록 규정함
 - 1995년에는 이해관계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조사 개시를 요청하도록 규정함
 - 2006년에는 이해관계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조사 개시를 요청하도록 규정함
 - 2009년에는 이해관계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사 개시를 요청하도록 규정함

- 상계관세도 덤핑방지관세와 마찬가지로 부과 주체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하는 것이 아니며 주무부장관이 조사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직권으로 판단하기에는 규정상 모호한 부분이 있음
 - 상계관세 관련 조사를 담당하는 무역위원회 또한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없음
 - 현재까지 주무부장관의 부과요청으로 조사를 개시한 건수는 전무함

40) 2016년의 일부 개정은 조사 시 고려 요소에 대한 개정으로 조사 주체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아 2006년과 2009년 개정을 살펴봄

2. 집행기관

가. WTO

- GATT 체제하의 반덤핑 협정과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서는 참여를 밝힌 계약국(contracting parties)이 조사 및 집행기관이었음
- WTO 반덤핑 협정과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서는 회원국의 조사당국(investigating authorities) 혹은 당국(authorities)이 조사 및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를 담당한다고 규정함
 - 직권조사 개시의 경우 당국(authorities)이 담당하도록 규정함
- 기타 반덤핑 협정 및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서는 각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된 반덤핑위원회(Committee on Anti-Dumping Practices) 및 보조금 및 상계조치 위원회(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설립을 규정함
 - 회원국(Each member)은 반덤핑위원회와 보조금 및 상계조치 위원회에 조사를 개시하고 수행하는 각 회원국의 당국(authorities)에 국내절차를 통보해야 함

나. 미국

- 미국의 무역구제 집행기관은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이하 ITC)와 국제무역관리청(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이하 ITA)으로 이원화함

- 무역구제의 양측인 두 기관은 무역 관련법 제정을 통해 독립적인 무역구제 권한을 위임받음⁴¹⁾
 - 1954년부터 미국 의회는 피해판정에 대한 책임을 국제무역위원회에 이임함
 - 국제무역관리청은 준사법조직이며 상무부 산하의 집행조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두 기관 모두 무역구제를 위한 기관이나 ITC가 산업피해를 조사·판정한다면, 피해조사를 통한 덤핑판정 및 마진율 산정은 상무부 권한이라는 차이가 있음
 - 조사 개시는 상무부 결정에 따라 이뤄지며, ITC의 예비피해판정, 상무부의 덤핑 여부 판정, ITC의 피해 최종판정 등의 과정에서 두 기관은 상호 통보하도록 규정함⁴²⁾

1) 국제무역위원회(ITC)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무역구제업무가 증가하고 처리가 복잡해지면서 설립되었으며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임⁴³⁾
 - 국제무역위원회의 전신은 1882년 설립된 관세위원회(US Tariff Commission)로, 1974년 「통상법」 제정을 계기로 1975년부터 대통령 직속의 준사법적 독립 기관으로 개칭·운영되고 있음

- 국제무역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대외무역이 미국 내 생산, 고용,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모든 요인을 조사해 미국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임⁴⁴⁾

41) 「연방헌법(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제1조 제8항, <https://www.law.cornell.edu/constitution/articlei#section1>, 「연방법(United States Code)」 제2171조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9/2171>, Marcus Noland 외 4인 *Assessing Trade Agendas in the US Presidential Campaign*, 피터슨국제경제연구원(이하 PIIE), 2016. 9, p. 6.

42) 현실적으로는 두 기관은 무역구제 관련 권한을 나눠 가졌기 때문에 업무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43) 국제공정무역학회, 「한중 FTA에 따른 무역구제제도와 조직의 효율적인 운용방안 연구」, 2014. 12, p. 34.

44) USITC 홈페이지, https://www.usitc.gov/press_room/about_usitc.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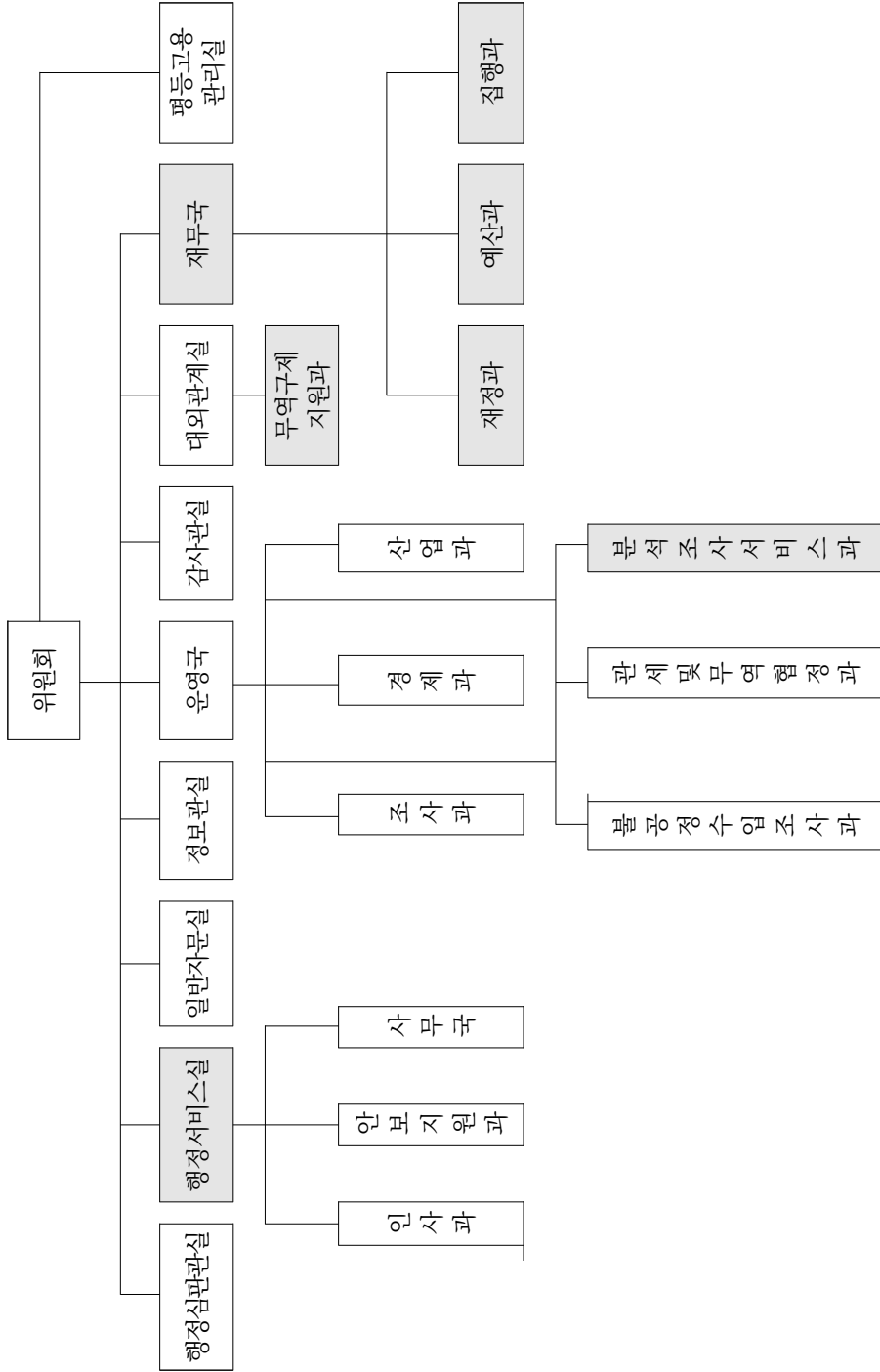
-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조사와 판단을 수행하는데 수입으로 인한 피해조사, 지식재산권 관련 조사, 산업 및 경제 분석, 관세 및 무역에 대한 정보 제공, 무역 정책 지원 등이 있음⁴⁵⁾
- ITC는 위원회 이하 9개 부서로 구성되었으며 행정서비스실과 운영실, 재정실은 하위 부서를 두어 운영함
 - 행정심판관실은 심판관, 법률연구관, 경제학자 및 지원인력 등으로 구성되며, 제 337조 조사과정에서 증거 관련 공청회를 주재하고, 제337조 위반 여부에 대한 예비판정을 내리는 것임
 - 일반자문실은 변호사와 자문관들로 구성되고, 조사 활동 때 위원들의 자문에 응하고, 사법심사가 진행될 때 법원에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준비서면을 작성함
 - 정보관실은 광범위한 자료의 수집, 조작 및 저장으로 위원회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며, 위원들의 전산활용을 통한 업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컴퓨터 및 통계 서비스, 응용개발 및 자료정리와 관계된 업무를 수행함
 - 운영국은 법이 정하는 모든 조사업무, 연구업무 및 위원회에 부과된 특정의 사업을 개시·감독하며, 완료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필요한 경우 간행물을 발간함
 - 감사관실은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법규, 제규정 및 절차에 관한 경제성, 능률성과 효용성 제고를 위해 제안과 권고 등을 업무로 하며, 그 내용은 위원장에게 직접 보고됨
 - 대외관계실은 USTR이 행하는 각종 무역협정계획과 무역정책의 기술적인 지원 관리 기능을 수행하며, 행정부 및 의회와의 활동을 조정하고, 언론기관 관련 업무도 관장함
 - 평등고용관리실은 행정관리국과 더불어 고용발전 업무를 담당함

□ 동 조직은 2014년에 신설부서 설치 등 개편이 있었음⁴⁶⁾

45) USITC 홈페이지, https://www.usitc.gov/press_room/about_usitc.htm

- 신설부서는 행정서비스실(Office of Administrative Services), 운영국 아래 분석조사실(Office of Analysis and Research Services), 대외관계실 아래 무역구제지원과(Trade Remedy Assistance Office), 재무국(Office of the Chief Financial Officer)임
 - 행정서비스실 아래 인사과, 안보지원과, 사무국이 있으며, 재무국 아래 재무과(Office of Finance), 예산과(Office of Budget), 집행과(Office of Procurement)를 두어 전문성을 강화함
 - 운영국에는 기존의 5개과 외에 분석조사서비스과(Office of Analysis and Research Services)를 신설해 분석조사 업무를 강화함

[그림 II -1]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조직도(2014년 조직개편 반영)



주: 음영 표시는 신설된 부서
 자료: ITC 홈페이지, https://www.usitc.gov/press_room/documents/usitc_organization_chart.pdf(검색일자: 2019. 1. 15)

- ITC가 운용하는 인력은 2019년 1월 기준 위원(Commissioner) 4명을 포함해 386명임⁴⁷⁾
 - ITC 위원은 민주당·공화당 각 3명씩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나, 2019년 1월을 기준으로 2명은 공석 상태임⁴⁸⁾
 - 임기는 9년이며, 5년 이상 재직한 위원은 재임이 불가능함

- 2018년 기준 가장 많은 인원이 배치된 부서는 운영실로 배정인원은 전체 386명 중 187명으로 조직의 48.5%를 차지함⁴⁹⁾
 - 운영실 내의 산업과(Industries)는 운영실 전체 배정인원 187명 중 61명인 약 33%임
 - 산업과는 무역이 미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업무와 관세율표, 무역 현안, 통상 관련 법안 검토 등의 기술적·경제적 정보를 제공함

- 2018년 기준 ITC 예산은 9,370만달러로 이는 전년 8,918만달러보다 5.06% 증가한 금액임⁵⁰⁾
 - 예산의 주요 구성은 임금, 렌트, 서비스, 직업훈련, 기타 비용으로 집계됨
 - 2018년 기준 인건비는 6,534만달러로 예산의 69.7%를 차지하며, 2017년 대비 180만달러 증액됨

- ITC는 2019년 할당 예산은 9,750만달러로 전년 대비 4% 증액되었고, 인력 (temporary staff에 해당) 역시 늘릴 예정임⁵¹⁾

47)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2018 Fiscal Review, https://www.usitc.gov/documents/final_2018_usitc_budget.pdf

48) 민주당: Rhonda K. Schmidlein, Irving A. Williamson, 공화당 David S. Johanson, Meredith M. Broadb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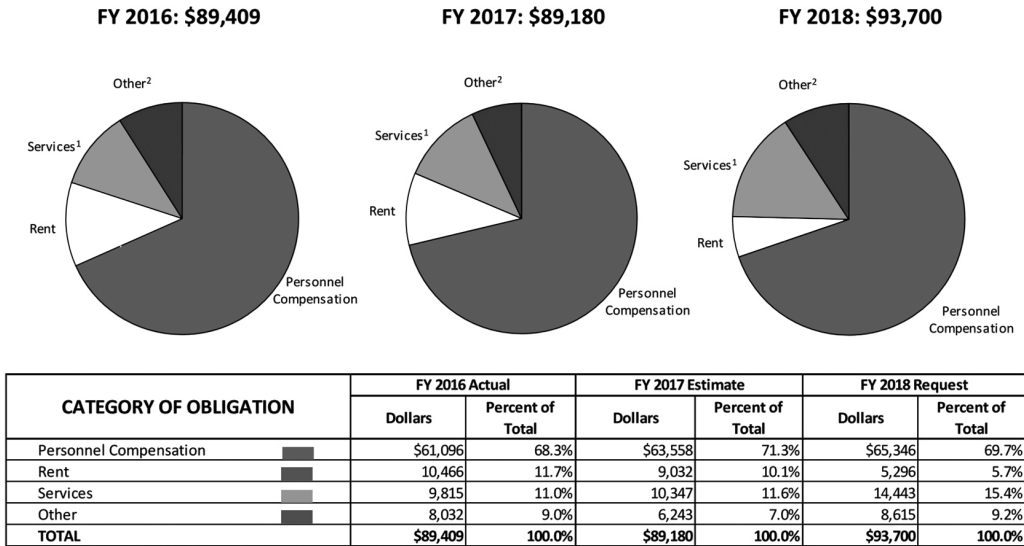
49) USITC, Budget Justification Fiscal Year 2018, p. 57, https://www.usitc.gov/documents/final_2018_usitc_budget.pdf

50) USITC, Budget Justification Fiscal Year 2018, p. 49, https://www.usitc.gov/documents/final_2018_usitc_budget.pdf

51) An American Budget(Fiscal Year 2019), pp. 11~20,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https://www.usitc.gov/documents/final-2019-usitc-executive-summary_508-compliant.pdf

[그림 II-2] ITC 예산 내역(2016~2018년)

(단위: 천달러)



자료: USITC, *Budget Justification Fiscal Year 2018*, p. 49, https://www.usitc.gov/documents/final_2018_usitc_budget.pdf

2)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관리청(ITA)

- 전술한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산업피해를 조사한다면, 상무부의 국제무역관리청(ITA)은 덤핑판정 및 마진산정을 담당함
 - 미국 의회는 무역구제에 관한 업무를 국제무역위원회와 상무부에 나누어 위임하였음
- ITA 조직은 국제무역 행정 차관 아래 각 차관보가 담당하는 4개 실과 그 외 보좌기관으로 구성됨
 - 4개 실은 무역촉진 조정위원회 차관보(Trade Promotion Coordinating Committee Secreariat), 수출시장 차관보(Assistant Secretary For Global Market), 산업 및 분석 차관보(Assistant Secretary For Industry and Analysis), 집행 및 준법 차관보(Assistant Secretary For Enforcement and Compliance)임

- ITA는 산업피해 조사와 덤핑 및 보조금 마진을 산정, 제소요건에 관한 업무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주요 부서로 산업 및 분석실, 집행 및 준수실, 수출 시장실이 있음
 - 동 조직의 임무는 미국 기업(특히 중소기업)에 시기적절하고 실행 가능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 우선순위가 낮은 기능과 활동을 제거 또는 축소, 우선순위가 높은 활동을 강화, 정보 관리를 현대화하는 것임
 - ITA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관한 업무, 덤핑 및 보조금의 존재 유무조사, 관세율 산정, 국내 산업에 대한 지원 업무 국내 산업(특히 중소기업) 덤핑 및 상계관세조치를 위한 조사 신청 시 증거의 충분성 등 법적 제소요건과 관련한 업무 지원, 국제무역규범에 관한 협상과정 참여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협상은 USTR과 함께 반덤핑·상계관세조치에 관한 국제무역협상 외에도 철강·조선 등 특정산업부문의 국제무역협상 참여를 포함함

[그림 II-3] 국제무역관리청(ITA) 조직도



주: 음영표시는 신설된 부서
 자료: ITA Budget Report, p. 3, <http://www.osec.doc.gov/bmi/Budget/FY17CBJ/ITA%20FY%202017%20CBJ%20Final%20not508.pdf>(검색일자: 2019. 1. 15)

- 산업 및 분석실(Industry and Analysis)은 경쟁력, 무역정책, 무역촉진에 대한 미국 정부의 목표를 뒷받침하는 고유한 부문별 전문분석정보를 제공함
 - 복잡한 무역 문제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미국 기업 및 정부기관이 데이터, 분석 도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미국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무역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산업, 표준 및 경제적 전문지식을 구축함
 -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복잡한 정책 대응을 모델링하고 불공정 무역조치에 대한 정책 대응이 미국 기업과 미국 근로자를 지원하는지 분석함
 - 미국 내 외국 투자 기관 위원회에 대한 부서 간 업무를 조정함(CFIUS)
 - 의사결정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시장에서 기업의 성공을 돕기 위해 대중과 기업에 직접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시장정보(Market Intelligence) 제품을 개발함
 - 수천 개 기업이 미국-EU, 미국-스위스 개인 정보 프로그램의 설계와 관리를 통해 해외 시장에 데이터를 계속 전송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다른 시장에서 미국 사업에 부당하게 불리한 데이터 현지화 규정을 방지함

- 집행 및 준수실(Enforcement and Compliance)의 역할은 미국 무역법 시행, 기존 무역협정 준수 및 감시, 무역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무역협정 협상 지원 등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임
 - 미국 반덤핑관세(AD) 및 상계 「관세(CVD)법」에 따른 조사 및 검토를 실시하고, 외국 정부와 수출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상쇄하기 위한 자료수집을 통해 미국 제조업체, 근로자 및 농민이 유해하게 버려지거나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도록 보호함
 - 외국 정부 활동에서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초래할 수 있는 시장 왜곡의 확산을 줄이기 위해 다른 프로그램과 정책을 개발 및 실행함
 - 외국 정부가 국제무역 협정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 외국 정부 무역과 투자 장벽의 적용받는 미국 수출업체 및 투자자를 지원함

- 광범위한 무역 협정 주제와 정책 수립 및 이행을 감독하는 것 외에 지정된 쌍무, 다자 및 지역 무역, 투자 협상에서 미국의 상업적 이익 표현을 조정함
- 수출시장실(Global Market)은 미국 기업을 위한 포괄적인 수출 촉진 서비스와 시장 접근 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함
 - 미국 수출업자와 근로자를 위한 국제 시장을 단계별로 분류함
 - 미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무역장벽과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없애기 위해 노력함
 - 미국 중소기업(SME) 수출업자를 글로벌 기회 및 유통 채널과 연계하는 역할을 함
 - 미국 내부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함
- ITA는 2019년에 반덤핑과 상계관세 조사를 포함한 무역 시행과 규정준수를 강화하는 집행, 준법실의 업무 및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기관의 수출 촉진과 무역 분석 활동은 기존보다 축소할 것임을 밝힘⁵²⁾
 -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직권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2017년 예산 안에서 상무부 내 직권조사 기능 강화를 위해 예산을 증액한 바 있음⁵³⁾
 - 2017년 ITA는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집행강화를 위한 인력고용을 이유로 200만달러 추가예산 편성을 요청함⁵⁴⁾
- ITA 인력은 2018년 기준 1,880명이며 2019년에는 집행 및 준법실 28명, 산업 및 분석실 10명을 추가 고용하기로 계획함⁵⁵⁾

52) ITA Budget Report 2019, p. 41, http://www.osec.doc.gov/bmi/budget/FY19BIB/FY_2019_DOC_BiB-2122018.pdf(검색일자: 2019. 1. 15)

53) 백악관 예산안 2019, pp. 29~31,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18/02/budget-fy2019.pdf>(검색일자: 2019. 1. 15)

54) Department of Commerce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Budget Estimates, Fiscal Year 2017(검색일자: 2019. 1. 15) Congressional Submission, p. 6, <http://www.osec.doc.gov/bmi/Budget/FY17CBJ/ITA%20FY%202017%20CBJ%20Final%20not508.pdf>(검색일자: 2019. 1. 15)

55) U.S. Department of Commerce Budget in Brief(2019), p. 42. http://www.osec.doc.gov/bmi/budget/FY19BIB/FY_2019_DOC_BiB-2122018.pdf(검색일자: 2019. 1. 15)

- 산업 및 분석실 227명, 집행 및 준법실 351명, 수출시장실 1,137명, 행정 (Executive Direction/Administration) 116명과 그 외 49명임
- ITA 예산은 2018년 기준 5억 472만달러로, 2019년에 수출시장실은 대폭 축소하고 집행 및 준법실과 산업 및 분석실의 예산은 증액하기로 함⁵⁶⁾
 - 예산이 증액되는 분야는 집행 및 준법실의 반덤핑과 상계관세 사례의 직권조사 부문으로 상세사항은 다음과 같음
 - 직권조사 분석에 362만 3천달러, 무역집행력 및 분석에 118만 9천달러, 산업 및 분석실에 196만 3천달러 증액하기로 함⁵⁷⁾
 - 한편 수출시장(Global Market)의 수출촉진 및 무역분석 분야의 2019년 예산은 큰 폭으로(4,448만달러) 감액됨
- 기존보다 집행 및 준법실을 확대하고 수출시장실을 대폭 줄이는 것은 수출시장 확대보다 내수시장을 보호하고 불공정무역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됨

다.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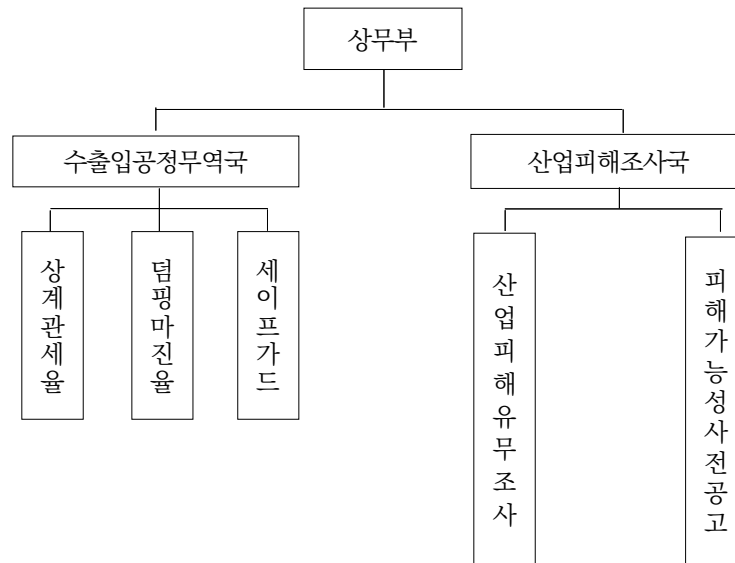
- 중국의 무역구제업무는 중국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가 담당함
 - 상무부 산하 수출입공정무역국(Bureau of Fair Trade for Import & Export)은 덤핑조사 업무를 담당하며, 산업피해조사국(Bureau of Industrial Injury Investigation)이 산업피해 및 인과관계를 조사함
 - 2003년 3월에 기존 대외무역경제합작부(MOFTEC)와 국가경제무역위원회(SETC)가 상무부로 통합됨

56) U.S. Department of Commerce Budget in Brief(2019), p. 44, http://www.osec.doc.gov/bmi/budget/FY19BIB/FY_2019_DOC_BiB-2122018.pdf(검색일자: 2019. 1. 15)

57) ITA Budget Estimates(2019), p. 9, http://www.osec.doc.gov/bmi/budget/FY19CBI/ITA_FY19_President%27s_Budget_FINAL_508_Compliant.pdf(검색일자: 2019. 1. 15)

-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Tariff Commission of State Council)는 상무부의 권고를 검토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함
- 관세세칙위원회는 부처 간 업무조정기구로 일반관세,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과 같은 특별관세율을 제정 또는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함
 - 재무부, 세관총서(우리나라 관세청 역할), 상무부의 부장관 등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재무부 장관이 맡음

[그림 II-4] 중국의 무역구제제도 집행조직



자료: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http://pyywww.mofcom.gov.cn>(검색일자: 2019. 1. 15)

라. EU

- 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 개시 및 종료, 잠정조치적용, 부과결정 등 대부분의 무역구제조치 시행에 관한 업무를 EU집행위원회에서 담당함
 - EU집행위원회는 EU의 행정부 역할을 담당하며 각종 정책을 입안하고, 이익을 수호하는 유럽통합의 중심기구로서⁵⁸⁾ 집행위원회는 임기 5년으로 집행위원장 1명과 27명의 집행위원으로 구성됨
 - 긴급조치조항 운영권을 가지고 긴급수입제한 조치, 덤핑규제 등 긴급 사안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
 - 위원회와 사무총장, 감사관, 대변인 등 22개 지원부서와 총 49개 총국(DG: Directorates-General)으로 구성되었으며⁵⁹⁾ EU집행위원회의 직원은 2018년 9월 기준 약 3만 2천명임⁶⁰⁾

- 49개 총국 중 무역구제조치업무는 EU통상총국(Taxation and Customs Union)이 담당하며 하위 국(Directorate) 중 H국(무역구제)에서 담당함⁶¹⁾
 - 2018년 1월 1일 기준 EU통상총국의 직원은 406명임⁶²⁾

- EU통상총국에 2018년 지급된 예산은 약 1억 6,800만유로이며 2019년 예산은 약 800만유로가 증가한 1억 7,600만유로임

58) 외교통상부, http://www.mofa.go.kr/www/wpge/m_3854/contents.do(검색일자: 2019. 1. 14)

59) 외교통상부, 『주요국 수입규제 가이드』, 2018. 12. p. 9.

60) EU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info/departments_en(검색일자: 2019. 1. 14)

61) EU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sites/taxation/files/organi_en.pdf (검색일자: 2019. 1. 15)

62) EU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about_the_european_commission/departments_and_executive_agencies/documents/general-activity-report-2017-human-resources-and-security_en.pdf(검색일자: 2019. 1. 5)

〈표 II-12〉 EU통상총국 예산(2018~2019년)

(단위: Euro)

구분	2018 예산		2019 예산	
	추정	지급	추정	지급
총계	175,802,112	168,303,344	177,201,421	176,125,421

자료: EU집행위원회, *DRAFT General Budget of the European Union for the financial year 2019*. Vol. 3, 2018. 6. 21, p. 781.

- EU집행위원회는 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와 관련된 일련의 조사절차 및 중심사안에 대해 EU자문위원회(Advisory)와 협의해야 함⁶³⁾
 - EU자문위원회는 각국 대표 및 EU집행위원회 대표로 구성되었으며 덤핑존재 및 마진 산정법, 피해 존재 및 정도, 덤핑수입품과 피해 간 인과관계, 덤핑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조치, 조치시행 방법을 협의해야 함⁶⁴⁾

- 덤핑 및 상계관세의 최종적인 부과 결정은 EU이사회(Council)에서 담당하나⁶⁵⁾ 규정 개정을 통하여 EU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함⁶⁶⁾
 - 규정 개정 전 덤핑 및 상계관세의 잠정적인 조치는 EU집행위에서 부과를 결정하였고, 확정 조치는 EU집행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EU이사회에서 부과하였음
 - 기존에는 EU집행위원회의 제안을 EU이사회가 단순 과반수에 따라 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판정을 내리고 이의 없이 EU집행위원회의 제안을 따랐으나 규정 개정으로 EU집행위원회에서 확정조치 부과가 가능하게 됨
 - EU이사회는 EU 주요 입법기관으로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는 정치적 의사결정기관이며, 각 회원국의 대표자 1인으로 구성되어 자국 정부로부터 독립된 EU집행위원회와 달리 자국의 국익을 대변함

63) Regulation(EU) 2016/1036 Article 15

64) 외교통상부, 『주요국 수입규제 가이드』, 2018. 12, p. 11.

65) Council Regulation(EC) 1225/2009 Article 9(4) 및 Council Regulation(EC) 597/2009 Article 15(1)

66) Regulation(EU) 2016/1036 Article 9(4) 및 Regulation(EU) 2016/1037 Article 15(1)

[그림 II -5] EU통상총국(Taxation and Customs Union) 조직도(2018년 7월 기준)

총국장(Director General)									
총국장 비서 (Assistant to DG)		총국장 비서 (Assistant to DG)							
부국장(Deputy Director General)									
국A (Directorate A) 자원, 정보, 정책조정	국B (Directorate B) 서비스, 투자 및 공공조달	국C (Directorate C)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국D (Directorate D) 지속가능한 개발, 경제협력, 아프리카/카리브/태평양지역 국가, 농수산식품	국E (Directorate E) 인접국, 미국 및 캐나다	국F (Directorate F) WTO 관련 문제 및 법적문제, 상품무역	국G (Directorate G) 무역정책 및 시장접근	국H (Directorate H) 무역구제	부서A1(Unit A1) 자원, 전략계획	부서H1(Unit H1) 일반정책, WTO 협력, 산업협력
부서A2(Unit A2) 정책조정, 기관 내부 관계	부서B1(Unit B1) 서비스	부서C1(Unit C1) 극동지역, 베이징 대표부, 도쿄 대표부	부서D1(Unit D1) 무역 및 지속가능한 개발, 일반특혜관세제도	부서E1(Unit E1) 미국 및 캐나다, 위싱턴 대표부	부서F1(Unit F1) WTO 조정, OECD, 수출신용 및 이용용도	부서G1(Unit G1) 무역전략	부서H2(Unit H2) 투자 1 - 무역구제 관련 회원국 협력	부서A3(Unit A3) 정보, 커뮤니케이션, 시민사회	부서H3(Unit H3) 투자 II - 우회탈피
부서A4(Unit A4) 정보기술 및 IT 시스템	부서B2(Unit B2) 투자	부서C2(Unit C2)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호주, 뉴질랜드	부서D2(Unit D2) 경제협력, 아프리카/카리브/태평양 지역국가, 해외국가 및 영토	부서E2(Unit E2) 러시아, CIS, 우크라이나, 서발칸반도, EFTA, EEA, 터키	부서F2(Unit F2) 분쟁해결 및 무역정책 관련 법률적 사안	부서G2(Unit G2) 경제분석, 무역분석	부서H4(Unit H4) 투자 III - 이행 모니터링	부서A5(Unit A5) 투명성 및 평가	부서H5(Unit H5) 투자 - IV 무역구제 관련 제3국과의 협력
	부서B3(Unit B3) 지적재산권 및 공공조달	부서C3(Unit C3) 라틴 아메리카	부서D3(Unit D3) 농수산물, 식품위생 및 동식물검역, 바이오기술	부서E3(Unit E3) 지중해 및 중동	부서F3(Unit F3) 관세 및 비관세 협상, 원산지	부서G3(Unit G3) 시장접근, 산업, 에너지 및 원자재			

자료: EU 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sites/taxation/files/organigram_en.pdf(검색일자: 2019. 1. 15)

마. 우리나라

- 실질적 피해를 받은 국내 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를 요청할 수 있음⁶⁷⁾
- 덤핑사실,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 및 실질적 피해 등에 관한 조사는 무역위원회가 담당하며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함⁶⁸⁾
- 덤핑 및 보조금에 관한 실질적인 조사를 담당하는 무역위원회는 1987년 「불공정 무역조사법」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으로 설치함
 - 사무기구로써 무역 조사실을 두어 위원회의 각종 조사와 업무처리를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됨⁶⁹⁾
 - 무역위원회는 홈페이지 기준(2019.1) 위원장 1명, 위원 7명을 포함 총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됨⁷⁰⁾
- 무역위원회는 국내산업 피해 조사, 덤핑 및 보조금 조사, 불공정수출입 조사 등의 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무역위원회 소속으로 무역조사실을 둠⁷¹⁾
 - 무역조사실의 근무인원은 홈페이지 기준(2019.1) 약 39명⁷²⁾임⁷³⁾

67) 정재호 외, 『주요국의 수입규제제도 비교연구』, 2018. 6, p. 129.

68) 정재호 외, 『주요국의 수입규제제도 비교연구』, 2018. 6, pp. 131~132.

69) 무역위원회, 『30년사 공정무역 질서 확립 30년을 담다』, 2017. 9, p. 42.

70)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ktc.go.kr:20443/pageLink.do?link=/contents/introduce/information>(검색일자: 2019. 1.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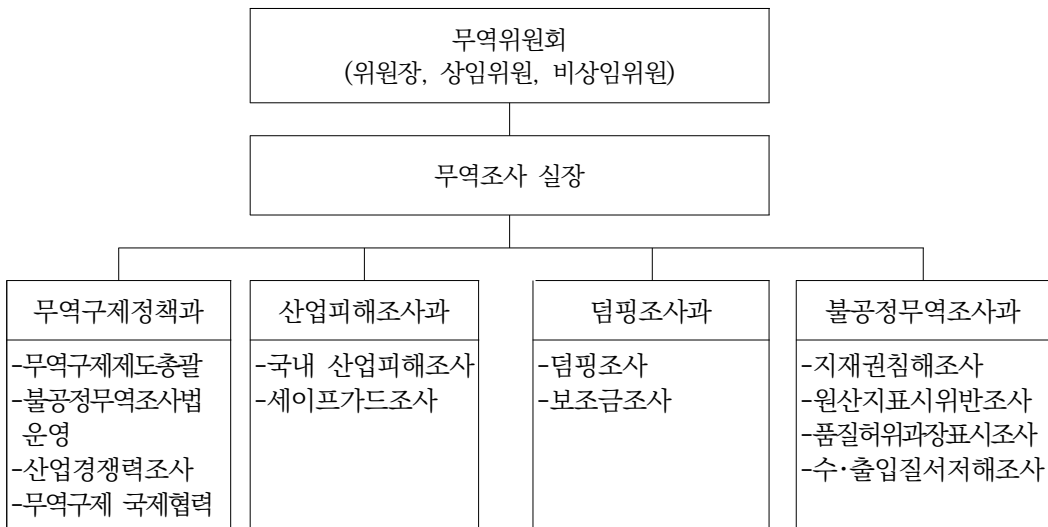
71) 무역위원회, 『30년사 공정무역 질서 확립 30년을 담다』, 2017. 9, p. 44.

72) 무역위원회 2017년 보고서 기준 45명으로 홈페이지상 확인가능한 인력

73)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ktc.go.kr:20443/pageLink.do?link=/contents/introduce/postwork>(검색일자: 2019. 1. 14)

- 무역조사실은 무역구제정책과, 산업피해조사과, 덤핑조사과, 불공정무역조사과로 4개과임⁷⁴⁾
 - 무역구제정책과는 무역구제제도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및 조정, 무역구제 국제협력정책 총괄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산업피해조사과는 덤핑방지 및 상계관세 부과 신청에 따른 국내 산업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재심사에 따른 국내 산업피해조사 및 관련된 대외협력업무 등을 수행함
 - 덤핑조사과는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에 따른 덤핑수입사실 및 보조금지급사실에 대한 조사업무, 이에 부수되는 덤핑률 및 보조금률의 조사업무, 이에 수반되는 대외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함
 - 불공정무역조사과는 원산지표시 위반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품 수·출입, 수·출입 질서 저해 행위에 대한 조사·판정,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함

[그림 II-6] 무역위원회 조직도



자료: 무역위원회, 『30년사 공정무역 질서 확립 30년을 담다』, 2017. 9, p. 44.

74) 무역위원회, 『30년사 공정무역 질서 확립 30년을 담다』, 2017. 9, p. 44.

- 무역위원회에는 2019년 현재 약 17억원의 예산이 배정됨
 - 2018년의 예산 약13억원보다 31.9% 증가함
 - 2019년의 예산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증가하는 덤핑, 지재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와 판정, 중소기업의 제도 활용 촉진을 위한 조사제도 홍보, 산업피해 예상품목 경쟁력 조사 등 추가 자원소요를 감안하여 증액함

〈표 II-13〉 무역위원회 예산(2018~2019년)

(단위: 백만원, %)

구분	2017 결산	2018 예산		2019 예산		증감	
		요구안	조정안(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총계	1,207	1,314	1,314	1,734	1,734	420	31.9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2019. 1, p. 83.

3. 요건

가. WTO

1) 반덤핑관세⁷⁵⁾

- 반덤핑관세는 반덤핑 협정 제2조(덤핑의 판정), 제3조(피해의 판정), 제4조(국내산업의 정의)에 해당하는 세 가지를 만족하는 요건으로 발동함
- 수입물품에 덤핑행위가 존재하고, 당해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야기되며, 덤핑행위와 국내 산업의 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부과됨

75) 외교통상부, 『주요국의 수입규제제도와 대응방안』, 2017. 9, pp. 24~33.

- 덤핑은 수출된 물품의 수출가격보다 수출국 내의 동종 상품(like product)에 대한 정상가격(normal value)이 낮은 것을 의미함⁷⁶⁾
- 실질적 피해는 덤핑수입물량, 그 덤핑수입이 수입국 국내시장의 동종물품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나온 증거에 따라 이루어짐⁷⁷⁾
 - 피해는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 실질적 피해의 우려(threat of material injury), 국내 산업 설립의 실질적 지연(material retardation of the establishment)을 포함하는 개념임
 - 국내 산업은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생산자 전체 또는 이들 중 생산량의 합계가 당해 상품의 국내 총 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자를 의미하며 국내 산업의 범위를 정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음⁷⁸⁾
- 인과관계는 국내 산업의 피해가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유발되어야 하며, 조사당국에 제출한 모든 증거를 근거로 입증해야 함

2) 상계관세⁷⁹⁾

-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1조(보조금의 정의), 제2조(특정성), 제6조(심각한 손상), 제14조(수혜자의 혜택을 기준으로 한 보조금의 계산)에서는 보조금협정의 적용대상인 보조금을 구성하는 요건으로 세 가지를 규정함⁸⁰⁾
- WTO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적인 기여(a financial contribution by a government or any public body)가 있어야 함
- 재정적 기여가 혜택을 부여해야 함
- 특정 산업 혹은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76) 반덤핑 협정 제2조

77) 반덤핑 협정 제3.1조

78) 반덤핑 협정 제4.1조

79) 외교통상부, 『주요국의 수입규제제도와 대응방안』, 2017. 9, pp. 38~42.

80) 외교통상부, 『주요국의 수입규제제도와 대응방안』, 2017. 9, pp. 38~42.

-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수출기업이 어떠한 혜택도 입지 못했다면 이는 상계조치 대상의 보조금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혜택은 반드시 보조금을 수령한 수출기업이 향유하여야 함
- 보조금 사용이 수출국의 특정 기업에만 한정될 때, 보조금의 성격상 특정성 (Specificity)이 있다고 판단함
- 법률상 또는 사실상 수출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수출보조금)과 수입품 대신 국내 상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수입대체보조금)은 금지보조금으로써 상계조치 대상임

- 상계관세를 부과하려면 보조금의 교부 사실 외에도 보조금에 따른 실질적 피해를 입증해야 함⁸¹⁾
 - 상계관세 조사대상 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수입국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 (material injury)를 입었거나 임박한 피해의 위협(threat)이 존재, 산업 설립에 증대한 지연이 야기되어야 하며 관련 내용은 반덤핑 협정과 동일함

나. 미국⁸²⁾

- 미국의 반덤핑관세 발동 요건은 세 가지로 WTO 반덤핑 협정의 발동 요건과 동일함
 - (a) 외국 기업의 수출상품이 미국 국내에서 정상가격(normal value)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거나 판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정상가격이란 외국 생산자가 본국 시장에서 소비용 판매를 위해 책정한 가격 즉 본국 시장가격(home market price) 또는 수출국에서의 시장가격(market price in the exporting country)을 의미함
 - (b) 수입품과 동종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덤핑된 수입품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81) 외교통상부, 『주요국의 수입규제제도와 대응방안』, 2017. 9, pp. 38~42.

82) 정재호 외, 『주요국의 수입규제제도 비교연구』, 2018. 6, pp. 14~16.

- (c) (a)와 (b)의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 반덤핑관세는 조사물품의 정상가격과 수출가격 간 차액을 기반으로 산정해서 교역 상대국 기업에 부과함
 - 반덤핑관세를 산정할 때 「미국 반덤핑법」상 덤핑마진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가격은 정상가격이며, 본국 시장가격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3국가가격(a third country price)을 사용하며, 이것조차 이용할 수 없는 경우는 구성가격(constructed value)을 산출하여 적용하도록 함
 - 제3국가가격(A Third Country Price)은 동종상품의 적절한 제3국 수출 시 비교 가능한 가격임
 - 구성가격(Constructed Value)은 원산지국에서 생산비용에 합리적인 금액의 관리비, 판매경비, 일반비용과 이윤을 합산한 가격임

- 상계관세 부과 요건은 WTO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의 발동 요건과 동일함
 - (a) 외국의 특정 산업 또는 특정 기업의 수출상품에 보조금이 교부된 경우
 - (b) 수입품과 동종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보조금이 교부된 수입품으로 인해 실질적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 (c) (a)와 (b)의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 특정 기업의 덤핑 및 보조금 행위가 문제되어 조사가 시작되면 해당국가의 동종상품을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기업이 조사 대상임
 - 반덤핑 및 상계관세는 수출국가가 아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임

다. 중국⁸³⁾

- 중국의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부과 요건은 각각 WTO ‘반덤핑 협정’,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과 대체로 유사하나, 구체적 기준이나 세부지침이 존재하지 않음
- 「반덤핑조례」에 따라 반덤핑관세 부과 요건은 다음과 같음⁸⁴⁾
 - (a) 덤핑이 존재해야 함
 - 덤핑이란 정상적인 무역과정 중 수입제품이 그 정상가격 이하의 수출가격으로 중국 시장에 진입함을 의미한다고 규정함⁸⁵⁾
 - 이때 정상가격은 수입제품의 동종제품이 수출국 국내 시장의 정상무역과정에서 비교 가능한 가격일 때⁸⁶⁾
 - 단 수입제품의 동종제품이 수출국 국내 시장의 정상무역과정에서 판매되지 않았거나 해당 동종제품의 가격, 수량을 공정하게 비교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동종제품을 제3국으로 수출할 때의 비교 가능한 가격 또는 해당 동종제품의 원산지(지역, 국가) 생산비용 및 합리적으로 산출한 부대비용에 이윤을 더한 것을 정상가격으로 간주함⁸⁷⁾
 - (b) 덤핑수입이 동종제품을 생산하는 관련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의 발생이나 위협을 초래하고, 국내 산업의 확립에 실질적 지연을 초래해야 함
 - 덤핑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초래했다고 확정할 경우에는, 긍정적 증거에 근거해야 하며, 덤핑수입제품의 수량과 가격, 덤핑수입제품이 국내산업의 경제요소 및 지표에 미친 영향, 덤핑수입제품의 수출국(지역), 원산지의 생산능력, 수출능력, 피조사제품의 재고 현황, 국내 산업에 피해를 초래한 기타 요인을 심사해야 함⁸⁸⁾

83) 정재호 외, 『주요국의 수입규제제도 비교연구』, 2018. 6, pp. 65~67.

84) 「반덤핑조례」 제3조~제6조, 제8조, 제12조

85) 「반덤핑조례」 제3조

86) 「반덤핑조례」 제4조 제1항

87) 「반덤핑조례」 제4조 제2항

- (c) 덤핑수입과 국내 산업 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함

- 「반보조금조례」에 따라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발동 요건은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상의 요건과 동일하며, 상세 조항은 다음과 같음
 - (a) 해당 수입제품에 외국 정부가 지급한 보조금이 존재해야 함
 - 동조례에 따라 상계관세조치가 발동되는 특정성을 가진 보조금은 ① 수출국 정부가 명확하게 한정된 일부 기업이나 산업이 받은 보조금 ② 수출국의 법률, 법규가 명확하게 한정된 산업이 획득한 보조금 ③ 지정된 특정지역 내 기업이나 산업이 획득한 보조금 ④ 수출실적을 조건으로 획득한 보조금 ⑤ 자국제품으로 수입제품을 대체해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보조금 중에 하나에 해당해야 함⁸⁹⁾
 - (b) 보조금이 지급된 수입제품이 동종제품을 생산하는 관련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의 발생 또는 우려를 초래하거나 국내 산업의 확립에 실질적 지연을 초래해야 함
 - 국내 산업에 초래한 피해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소를 심사해야 함⁹⁰⁾
 - 보조금 지원이 무역에 미친 영향
 - 보조금이 지원된 수입제품의 수량
 - 보조금이 지원된 수입제품의 가격
 - 보조금이 지원된 수입제품이 국내 산업 관련 경제요소와 지표에 미치는 영향
 - 보조금이 지원된 수입제품의 수출국, 원산지의 생산능력, 수출능력, 조사 대상 제품의 재고 상황, 국내 산업에 피해를 초래한 기타 요소 등임
 - (c) 보조금이 지급된 제품의 수입과 국내 산업 피해 간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함

88) 「반덤핑조례」 제8조

89) 「반보조금조례」 제4조

90) 「반보조금조례」 제8조

라. EU⁹¹⁾

1) 반덤핑관세

- 덤핑의 존재, 수입물품과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EU공동체 산업에 실질적 피해 또는 피해 위협, 덤핑과 실질적 피해 및 피해 위협 간 인과관계가 증명되는 것을 요건으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함
 - EU는 공동체이익 심사를 통해 EU공익에 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부과를 결정하며 공익에 반하는 경우 EU집행위원회 직권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음⁹²⁾
- 실질적 피해는 덤핑물품 수입량과 공동체 시장에서의 동종물품 가격 효과, 공동체 산업의 결과적 효과를 검토하여 결정함
 - 절대적인 기간 동안 공동체 내의 생산 및 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덤핑수입의 상당한 증가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함⁹³⁾
 - 실질적 피해 위협은 상당한 수입증가 가능성이 있는 덤핑수입의 증가율, 공동체로의 덤핑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수출자의 능력이나 그 증거, 국내가격 하락 및 가격인상을 억제하는지 여부, 수입국 내 조사대상 상품의 재고현황 등을 고려하여 판정함⁹⁴⁾
- 덤핑관세는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고려하여 덤핑마진(정상가격-수출가격)을 기초로 산정하여 부과함
 - 정상가격은 수출국에서 독립된 소비자가 일반적인 거래과정에서 지불하거나 지불 가능한 가격을 의미하며 최근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정상가격 판단 시 국가를 시장경제국 및 비시장경제국으로 구별하여 덤핑마진 산정에 차이를 둠⁹⁵⁾

91) 정재호 외, 『주요국의 수입규제제도 비교연구』, 2018. 6, pp. 96~98.

92) Regulation(EU) 2016/1036 Article 21(1)

93) Regulation(EU) 2016/1036 Article 3(2)

94) Regulation(EU) 2016/1036 Article 3(9)

95) 강민지, 「미국과 EU의 무역구제조치 관련 법 개정과 시사점」, 『KIEP 기초자료』, 18-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3. 20, p. 24.

- Regulation(EU) 2017/2321에 따라 제2조 6a가 신설되어 시장경제국과 비시장경제국 개념 대신 중대한 왜곡(Significant distortion) 개념이 반영됨⁹⁶⁾
 - 중대한 왜곡 판단 요소는 국영기업의 시장장악, 가격 및 비용 측면에서 국가개입,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 「파산법」, 「기업법」, 「재산법」 등의 부족 및 부적절, 임금 왜곡, 금융 왜곡 등임⁹⁷⁾
 - 따라서 중대한 왜곡이 있을 경우 비슷한 경제수준의 제3국 생산가/판매가, 국제가격 등을 정상가격 산정 시 참고함⁹⁸⁾
 - 개정된 규정에서는 시장경제국 여부와 상관없이 WTO 회원국 모두를 대상으로 규정하여 중대한 왜곡 여부 판단 시 보다 넓은 범위로 적용이 가능함
- 조사물품의 원재료에 왜곡이 존재 시 최소부과원칙을 적용하지 않기로 함⁹⁹⁾
 - 최소부과원칙은 덤핑마진과 피해마진 중 적은 금액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일한 원재료 또는 전기료 같은 에너지가 총생산원가의 17% 이상일 시 원재료 왜곡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함
 - 원재료 왜곡은 이증가격체계, 수출세, 수출커터, 수출제한, 최소 수출가, 통관상의 제약, 내수시장 의무 등의 상황을 의미함

2) 상계관세

- 상계 가능한 보조금의 존재,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입상품과 동종상품을 생산하는 EU 산업에 실질적 피해 또는 피해 위협, 보조금 지급과 실질적 피해 및 피해 위협 간 인과관계가 증명된다는 것을 요건으로 상계관세를 부과함

96) Regulation(EU) 2017/2321 Article 2(6(a))

97) Regulation(EU) 2017/2321 Article 2(6(a))

98) 강민지, 「미국과 EU의 무역구제조치 관련 법 개정과 시사점」, 『KIEP 기초자료』, 18-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3. 20, p. 24.

99) Regulation (EU) 2018/825

- 덤핑과 마찬가지로 EU공익에 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부과 여부를 결정함
 - 동종상품 및 EU 산업 등에 관한 정의는 반덤핑 정의와 동일함
 - 보조금은 원산지국 혹은 수출국에서 정부의 재정적 기여나 소득 또는 가격보조 형태의 존재, 이로 인한 혜택이 부여되는 것을 의미함¹⁰⁰⁾
- 보조금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부과되는 것과 같은 특정성이 있어야만 상계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¹⁰¹⁾
- 특정성 있는 보조금은 그 자체로써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입품이 동종상품을 생산하는 공동체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에만 상계조치 대상이 됨
- 실질적 피해 요건은 반덤핑 요건과 동일하며 최소부과원칙은 더 이상 적용하지 않기로 규정을 개정함¹⁰²⁾

마. 우리나라¹⁰³⁾

1) 덤핑방지관세

- 해외 수출자가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여 국내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국내 산업의 발전이 지연되면 이를 구제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부과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함¹⁰⁴⁾
- 덤핑판정 시 고려되는 정상가격은 해당 물품의 공급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을 의미하며 덤핑가격은 조사대상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100) Regulation(EU) 2016/1037 Article 3

101) Regulation(EU) 2016/1037 Article 4(2)

102) Regulation(EU) 2018/825 Article 7(2)(a)

103) 정재호 외, 『주요국의 수입규제제도 비교연구』, 2018. 6, pp. 124~144.

104) 「관세법」 제51조

지급해야 하는 가격을 의미함¹⁰⁵⁾

-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은 가능한 동일한 시기 및 동일한 거래단계에서 비교해야 하며 해당 물품의 물리적 특성, 판매수량, 판매조건, 과세상의 차이, 거래단계의 차이 등이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을 조정해야 함

□ 실질적 피해는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우려되고,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를 의미하며¹⁰⁶⁾ 다음의 내용을 고려하여 판정함¹⁰⁷⁾

- 당해 물품의 수입이 절대적으로 증가되었는지 또는 국내생산이나 소비에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증가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함
- 덤핑물품의 가격이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덤핑물품의 수입가격이 수출국 내 정상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함
- 국내 산업의 생산량·가동률·재고·판매량·시장점유율·가격·이윤·생산성·투자수익·현금수지·고용·임금·성장·자본조달·투자능력·기술개발 등을 고려함

□ 인과관계는 국내 산업의 피해가 덤핑수입으로 유발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덤핑수입 이외 국내 산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배제하는 것을 의미함¹⁰⁸⁾

- 배제 요소는 덤핑가격으로 판매되지 않은 수입물품의 물량, 국내 수요 감소나 소비형태의 변화, 외국 생산자와 국내 생산자의 제한적인 무역관행 및 경쟁, 기술개발과 국내 산업의 수출실적 등임

105) 「관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106) 「관세법 시행령」 제61조

107) 무역위원회, 『30년사 공정무역 질서 확립 30년을 담다』, p. 133.

108) 무역위원회, 『30년사 공정무역 질서 확립 30년을 담다』, pp. 133~134.

2) 상계관세

- 외국에서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실질적 피해가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과함¹⁰⁹⁾
 -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그 물품에 대하여 해당 보조금 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도록 함

- 상계관세 부과 요청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내 산업은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 생산 사업을 의미함¹¹⁰⁾

- 보조금은 정부·공공기관 등의 재정지원 혜택 중 특정성이 있는 것을 의미함¹¹¹⁾
 - 특정성은 보조금 등이 특정 기업이나 산업 또는 특정 기업군이나 산업군에 지급되는 경우를 의미함
 - 보조금 등의 금액은 수혜자가 실제로 받는 혜택을 기준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에 따라 계산함

109) 「관세법」 제57조

110) 「관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111) 「관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2항, 제3항

4. 조사 절차

가. WTO¹¹²⁾

1) 조사절차 개시 및 조사

- 덤핑의 존재, 정도 및 영향을 판정하기 위한 조사, 보조금의 존재, 정도 및 효과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는 국내 산업에 의하거나 또는 이를 대신하여 행하여진 서면신청으로 개시할 수 있음¹¹³⁾
 - 특별한 상황에서 국내 산업의 서면신청 없이 조사를 개시할 경우 덤핑 및 피해와 보조금 및 피해의 인과관계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필요함

- 조사 개시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표명한 국내생산자들은 동종상품 총생산의 50% 이상을 생산하는 국내생산자의 지지가 있을 경우에만 조사 개시가 가능함¹¹⁴⁾
 - 조사 개시를 명시적으로 지지하는 국내생산자의 생산합계가 국내 총생산의 25% 미만일 경우에는 조사 개시가 불가함
 - 덤핑마진이 최소허용수준이거나, 실제 또는 잠재적인 덤핑수입량이나 피해가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고 당국이 결정할 경우에 조사는 즉각적으로 종결함¹¹⁵⁾
 - 보조금액이 최소허용수준 이하이거나 보조금을 받는 수입품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수량이나 피해가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고 당국이 결정할 경우에 조사는 즉각적으로 종결함¹¹⁶⁾

112) 외교통상부, http://www.mofa.go.kr/www/brd/m_3893/view.do?seq=294185(검색일자: 2019. 1. 16)

113) WTO 반덤핑 협정 제5조 제5항 및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11조 제1항

114) WTO 반덤핑 협정 제5조 제4항 및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11조 제6항

115) WTO 반덤핑 협정 제5조 제8항

116)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11조 제9항

-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조사는 1년 이내에 종결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개시 후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¹¹⁷⁾

2) 잠정조치의 부과

- 반덤핑관세의 잠정조치란 잠정적으로 산정된 덤핑마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잠정관세를 부과하거나, 잠정적으로 산정된 반덤핑관세액과 같은 보증금의 제공을 명하는 조치를 의미함¹¹⁸⁾
- 상계관세의 잠정조치는 잠정적으로 보조금액으로 산정된 금액과 같은 현금예치 또는 유가증권으로 담보되는 잠정 상계관세의 형태를 취함¹¹⁹⁾
- 국내 산업 피해에 관해 보조금 예비판정이 내려지며, 당국이 조사기간 중 초래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잠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¹²⁰⁾
- 잠정조치는 조사 개시일부터 60일 이전에는 적용할 수 없음¹²¹⁾
 - 잠정조치는 원칙적으로 4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¹²²⁾ 관련 무역에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수출자의 요청으로 관계당국이 결정한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적용될 수 있음¹²³⁾
 - 당국이 조사과정에서 덤핑마진보다 낮은 관세로 피해를 제거하기 충분한지 여부를 검토할 경우, 동 기간은 각각 6개월 및 9개월로 연장 가능함¹²⁴⁾

117) WTO 반덤핑 협정 제9조 제5항 및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11조 제11항

118) WTO 반덤핑 협정 제7조 제2항

119)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17조 제2항

120) WTO 반덤핑 협정 제7조 제1항 및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17조 제1항

121) WTO 반덤핑 협정 제7조 제3항, 제4항 및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17조 제2항-제5항

122) WTO 반덤핑 협정 제7조 제3항 및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17조 제3항

123) WTO 반덤핑 협정 제7조 제3항

124) WTO 반덤핑 협정 제7조 제4항

3) 확정조치의 부과

- 반덤핑관세는 판정된 덤핑마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잠정조치가 적용된 경우 적용 기간은 소급 적용할 수 있음¹²⁵⁾
- 상계관세는 보조금을 지급받고 수출된 상품의 단위당 보조금 지급 기준으로 계산된 보조금 액수를 초과하여 부과될 수 없으며 잠정조치가 적용된 경우 적용기간은 소급 적용할 수 있음¹²⁶⁾
- 반덤핑관세 금액이 소급 산정된 경우 반덤핑관세 지불의 최종 책임 판정은 반덤핑 관세액의 최종 산정 요청일로부터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이루어져야 하며 일반적으로 12개월 이내,¹²⁷⁾ 어떠한 경우에도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¹²⁸⁾
-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는 부과일(또는 덤핑 및 피해에 관한 가장 최근 검토 일자)로부터 5년 이내에 종결되어야 함¹²⁹⁾
 - 단 당국이 자체적으로 개시한 검토 또는 국내 산업에 의하거나 대신 이루어진 정당한 근거에 입각한 요청으로 개시된 검토에서 관세의 종료가 덤핑 및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을 초래할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부과조치는 연장 가능함

125) WTO 반덤핑 협정 제9조 제3항, 제10조 제2항

126)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20조 제2항

127) WTO 반덤핑 협정 제9조 제3항 및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21조 제4항

128) WTO 반덤핑 협정 제9조 제3항 및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21조 제3항

129) WTO 반덤핑 협정 제11조 제3항

나. 미국

1) 조사절차 개시 및 조사¹³⁰⁾

-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는 해당상품을 수출하는 수출국의 모든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함¹³¹⁾
 - 반덤핑 및 상계 조사가 개시되면 상무부(DOC)와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동시에 병렬로 진행함¹³²⁾
 - 조사가 개시되면 상무부는 덤핑 및 보조금 조사를 담당하며 USITC는 산업피해조사를 실시함
 - 단 수출기업 전수 조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수출물량을 기준으로 상위 5개 기업을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외 기업은 여타 마진(all others rate)을 적용함
- 조사 개시는 이해관계자가 조사를 청원하거나 상무부가 직권에 시행됨¹³³⁾
 - 관련 조문은 유효한 정보를 근거로 집행기관이 관세 부과를 위해 공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의심하는 경우 언제든지 반덤핑관세 조사가 개시된다고 밝힘
 - 외국의 생산자와 연계된 생산자, 수입인인 생산자 등은 신청이 불가능한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함
- 조사 개시 여부는 상무부가 결정하며, 제소가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조사 개시 결정을 해야 함¹³⁴⁾

130) 미국은 시장경제국가(market economy country)와 비시장경제국가(non-market economy country)를 조사할 때 다른 방식을 사용하는데 보고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시장경제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방식만 설명함

131) 이재민(2009), p. 87.

132) 「연방법(U.S.C.)」 제1673a조 제(b)항; 이장완, 「최근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미국 반덤핑·상계관세 판정과 시사점」, 2016. 8, p. 6.

133) 「연방법(U.S.C.)」 제1673a조 제(b)항 제(1)호 직권조사(Self-Initiation) 관련 부분

134) 언론에서 한국 기업이 덤핑으로 제소되었다고 표현하는데 반덤핑조사는 사법절차가 아니라 행정조사라는 측면에서 제소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제소로 표현함

- 집행기관은 일정조건에서 감시기간 동안 추가 공급국에 대해 공식 조사를 개시할 충분한 정보가 있다고 판단하면 즉시 조사를 개시함¹³⁵⁾
 - 일정조건이란 반덤핑관세 조사의 경우 ① 동종물품에 관하여 하나 이상의 반덤핑 명령이 내려 있을 경우 ② 집행기관의 판단 하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공급국으로부터 지속적인 덤핑위반이 있다고 믿어지거나 의심되는 경우 ③ 집행기관의 판단하에 반복 수입이 국내에 심각한 유통 문제를 야기할 경우임
 - 상계관세의 경우, 조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신청자의 정보가 보조금이 교부되었음을 뒷받침하는지를 검토하며, 검토결과 긍정판정이 나오면 조사를 개시함¹³⁶⁾

- 집행기관은 상무부와 USITC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상무부는 제소에 따라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개시를 결정하고, USITC는 산업피해 존재 여부에 대한 예비조사 절차를 개시함
- 상무부는 조사 개시 사실을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USITC는 제소장 접수일로부터 2 영업일(working days) 뒤 산업피해 조사를 위한 질문서를 발송 및 회수하여 자료를 취합함¹³⁷⁾
 - 질문서에 대한 답변이 접수되면 상무부 조사관들이 이를 상세히 검토하며, 이때 USITC는 상무부의 조사 개시 여부 검토와 무관하게 예비조사를 시행함
 - USITC는 조사신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문제된 상품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판정함
- 조사 대상 기간은 제소장이 접수된 날 이전 4개 분기임¹³⁸⁾
 - 예를 들어 2018년 5월에 제소장이 접수되면, 2017년 4월~2018년 3월까지가 조사 대상 기간임

135) 「연방법(U.S.C.)」 제1673a조 제(a)항 제(B)호, 추가적인 공급국은 동종물품의 수입에 대해 현재 반덤핑 조사가 계류중이지 않고 반덤핑 명령이 현재 시행중이지 않은 국가를 뜻함

136) 「연방법(U.S.C.)」 제1671a조 제(c)항 제(1)호 제(A)소호, 연방법(U.S.C.) 제1671a조 제(c)항 제(2)호

137) 연방관보 홈페이지, <http://www.federalregister.gov>

138) 연방관보 홈페이지, <http://www.federalregister.gov>

- 한편 덤핑 및 피해 존재에 대한 증거 불충분 또는 덤핑마진 및 수량이 적은 경우에는 조사가 종결됨
 - USITC 절차뿐 아니라 상무부 절차도 동시에 종료됨

2) 잠정조치의 부과

-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는 예비판정에서 긍정결정이 내려지면 관세정산 정지나 담보 예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치의 효력은 조기에 나타남
 - 수입자가 지불해야 할 담보예치금액이 증가하면 수입품의 국내가격이 상승해 국내 생산제품과 비교하여 가격 경쟁력이 떨어짐
- 덤핑·보조금이 존재하고 산업에 피해가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 덤핑 및 보조금의 존재와 그 평가금액에 대해 긍정적인 예비판정(Affirmative preliminary injury determination)을 내림
 - 덤핑과 보조금에 대한 예비판정은 상무부에서 수행하며, 미국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USITC에서 결정하여 예비판정을 내림
 - 상무부는 조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60일 내에 덤핑 유무를 결정해야 하며, 상계관세의 경우 65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 유무를 결정해야 함¹³⁹⁾
 - USITC는 조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내 또는 조사개시일부터 25일 내에 산업피해에 대한 예비판정을 내림¹⁴⁰⁾
- USITC와 상무부의 예비판정 후 7일 뒤에 동 판정결과가 연방관보에 게재되면, 그날을 기준으로 잠정조치가 취해짐¹⁴¹⁾

139) 「연방법(U.S.C.)」 제1671b조 제(b)항, 제1673b조

140) 「연방법(U.S.C.)」 제1671b조 제(b)항, 제1673b조

141) 「연방법(U.S.C.)」 제1673b조 제(b)항

- USITC 예비판정은 미국 내 기업과 상대국 수출기업의 답변서와 함께 제출된 자료, 서면입장서 등을 고려해서 결정함
- 상무부는 덤핑예비판정을 통해 덤핑마진을 계산하여 공개함
 - 조사 개시 후 140일 이내(연장 시 190일 이내)에 해야 함
- 미국은 관행적으로 잠정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필수적인 것은 아님¹⁴²⁾
 - 기업이 제출한 답변서를 검토하여 덤핑 및 보조금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예비판정을 내리며, 피조사 기업의 수출상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가 부과됨
- 잠정조치에 따라 수입한 물품의 정산(liquidation)은 보류되고 수입자는 예비판정에서 결정된 덤핑마진 또는 보조금 마진대로 관세를 예치해야 함¹⁴³⁾
 - 상무부가 예비판정 때 미소마진(de minimis) 이상의 덤핑마진율이나 보조금율을 발표하면, CBP는 조사 대상 물품의 정산을 중지하고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모든 수입자에게 앞으로 확정될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의 지불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의 현금 예치금(cash deposit)을 요구함
 - CBP는 덤핑마진이 2% 이하일 경우, 보조금 액수가 해당 전체 매출의 2%를 넘지 않으면 미소마진으로 규정함
 - 즉 2% 이상이면 물품청산 보류와, 덤핑마진별 관세예치를 집행함
-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의 부과절차는 크게 다르지 않으나 최종판결이 내려지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상계관세가 짧다는 특징이 있음

142) 외교통상부, 『주요국 수입규제 제도와 대응방안』, 2017. 9. p. 71.

143) 「연방법」 1673f, 1671f. 「미국 관세법」은 정산제도가 있는데, 수입자가 물품을 통관할 때 원산지과 품목분류번호, 특혜관세율 적용 여부 등을 스스로 판단하여 예상 관세액을 납부하게 됨. 또한 추후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대비해 관세보증(customs bond)을 제출하게 됨. 이후 관세청은 수입자가 신고한 내용을 검토한 뒤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관세징수절차를 마무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추가 관세를 징수하거나, 과다 지불된 관세를 환불해줌.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에서도 상무부의 예비판정이 내려지면 수입자가 조사 대상물품을 통관할 때 예비판정 결과에 따라 현금 예치금을 징수하는데 이때 현금예치율은 덤핑마진율 또는 보조금율과 같음

- 상계관세조사는 조사에서 최종판정까지 212~300일 소요되며, 반덤핑은 그보다 120여일이 더 소요됨¹⁴⁴⁾

3) 확정조치의 부과

- 예비판정이 내려진 후 현지실사(on-site verification)를 통해 제출된 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최종판정을 내림
 - 상무부 조사관이 조사 대상국에 위치한 의무답변자의 사무실 또는 미국 지사를 방문하여 제출된 자료의 정확도를 검증함
- 상무부의 긍정적인 최종판정(덤핑·보조금 인정) 이후 USITC는 피해최종판정을 내리며, USITC의 최종판정이 긍정인 경우 상무부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명령(duty order)을 공표해야 함¹⁴⁵⁾
 - USITC의 피해최종판정은 상무부의 긍정적인 최종판정 이후 45일 이내로 결정되며, 반덤핑 및 상계관세명령은 피해최종판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뤄져야 함
- 최종판정은 통상적으로 최종판정 기한의 마지막 날에 내려지며, 확정관세는 USITC 최종판정문의 관보 게재일부터 부과됨¹⁴⁶⁾
 - 최종판정은 상무부 예비판정 후 75일 이내에 내려지며, 상무부는 USITC의 최종판정이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덤핑·상계관세명령을 내림¹⁴⁷⁾
 - 최종판정은 예비판정 후 75일 이내에 60일 연장이 가능함
- 최종판정이 긍정(덤핑·보조금 인정)이면 잠정조치 시 적용했던 덤핑마진율 및 보조금률에서 확정판정 시 결정된 덤핑마진율 및 보조금 마진율로 변경되어 적용됨

144) 반덤핑관세의 경우 287~427일 정도 소요됨

145) 「연방법(U.S.C.)」 제1671e조 제(a)항

146) 이재민(2009), p. 79.

147) 「연방법(U.S.C.)」 제1671d조 제(a)항 제(1)호, 제1673조 제(a)항

- 잠정조치에 따른 반덤핑 및 상계관세 예치액은 예비판정 시 결정된 덤핑·보조금 마진율이 적용된 것이므로, 확정판정 시 마진율을 다시 적용함
 - 최종판정이 부정적인 경우 절차는 종료됨
- 수입물품에 대해 반덤핑관세부과가 확정된 경우 5년간 효력이 유지됨

다. 중국

1) 조사절차 개시 및 조사

- 반덤핑 및 상계관세조사는 민간과 상무부 직권으로 입안조사를 결정할 수 있음
- 민간이란 국내 산업 또는 국내 산업을 대표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관련 조직체 등을 통칭함
 - 상무부가 반덤핑조사의 서면 신청을 받지 못했지만 충분한 증거가 있어 덤핑 피해 및 양자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조사 개시가 가능함¹⁴⁸⁾
- 상무부는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사요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함¹⁴⁹⁾
- 반덤핑관세의 경우 신청자 적격 여부, 신청서 내용 및 첨부된 증거 등의 심사를 통해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함¹⁵⁰⁾
 - 상계관세의 경우 조사를 신청하는 수입제품에 보조금이 존재하는지, 국내 산업에 피해가 있는지, 보조금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조사함

148) 「반덤핑조례」 제18조, 「반보조금조례」 제18조

149) 상무부 홈페이지, <http://english.mofcom.gov.cn/>

150) 「반덤핑조례」 제16조

- 농산물과 관련된 국내 산업에 미친 보조금 피해 조사는 농업부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함¹⁵¹⁾

2) 잠정조치의 부과

- 상무부가 예비판정으로 덤핑과 보조금 성립이 확인되면 잠정 반덤핑조치와 잠정 상계관세를 실시할 수 있음
 - 예비판정 기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관행적으로 조사 개시일로부터 8~9개월 뒤에 내리는 것이 보통이나, 길게는 1년이 소요된 경우도 있음¹⁵²⁾
- 덤핑에 대한 잠정조치는 잠정반덤핑관세의 징수와 현금보증금, 보증서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제공된 담보 제공요구 중 하나를 실시할 수 있음
 - 반덤핑관세징수는 관세세칙위원회가 결정을 내리고 상무부가 이를 공고함
 - 현금보증금, 보증서 또는 기타 담보 제공 조치는 상무부가 결정하고, 집행은 세관에서 담당함¹⁵³⁾
 - 잠정반덤핑관세액 또는 제공한 현금보증금, 보증서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제공된 담보금액은 예비판정을 거쳐 확정된 덤핑마진을 초과할 수 없음¹⁵⁴⁾
- 예비판정으로 보조금 지원이 확인되고 국내 산업 피해가 인정된 경우 잠정 상계조치가 가능함
 - 세관은 현금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잠정상계관세의 징수를 실시함¹⁵⁵⁾
 - 잠정조치의 실시기간은 결정공고일로부터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151) 「반보조금조례」 제7조

152) 외교통상부, 『주요국 수입규제 제도와 대응방안』, p. 134.

153) 「반덤핑조례」 제29조

154) 「반덤핑조례」 제28조

155) 「반보조금조례」 제29조

3) 확정조치의 부과

- 중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운용절차는 조사 개시에서 최종판정까지 최장 18개월
까지로 규정하나 단계별 시한 규정이 없음
 - 조사에서 판정까지 기한은 12개월이며, 경우에 따라 6개월 연장 가능함¹⁵⁶⁾

- 덤핑 및 보조금 성립에 대한 최종판정이 확정되면 최종판정 공고일 이후 수입된
제품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가 적용됨
 - 최종판정에 따른 반덤핑관세 징수 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함
 - 공공이익에 부합해야 함¹⁵⁷⁾
 - 반덤핑관세의 납세자는 덤핑제품을 수입한 기업이어야 함¹⁵⁸⁾
 - 반덤핑관세의 징수는 상무부가 건의하고 국무원 관세세척위원회가 상무부의
건의에 따라 결정하며, 상무부는 이를 공고하고 세관은 공고 규정의 시행일부
터 집행함¹⁵⁹⁾
 - 최종판정에 따른 상계관세 징수 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함
 - 공공이익에 부합해야 함¹⁶⁰⁾
 - 상계관세의 납세자는 보조금 제품의 수입기업이어야 함¹⁶¹⁾
 - 상계관세의 징수는 상무부가 건의하고 국무원 관세세척위원회가 상무부의
건의에 따라 결정하며, 상무부가 이를 공고하고 세관은 공고 규정의 시행일
로부터 집행함¹⁶²⁾

156) 「반덤핑조례」 제51조, 「반보조금조례」 제50조

157) 「반덤핑조례」 제37조

158) 「반덤핑조례」 제40조

159) 「반덤핑조례」 제38조

160) 「반보조금조례」 제38조

161) 「반보조금조례」 제41조

162) 「반보조금조례」 제39조

라. EU¹⁶³⁾

1) 조사절차 개시 및 조사

- 개인, 법인 또는 EU 산업을 대표하는 조합(일반적으로 협회 또는 공동체 생산자 연합),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의 지원을 받는 자가 EU집행위원회에 서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사 개시가 이루어짐¹⁶⁴⁾
 - 제조장은 회원국에서 집행위원회에 송부하거나 EU집행위원회에 직접 송부할 수 있음¹⁶⁵⁾
 - 서면신청서에는 덤핑과 피해, 그리고 덤핑 및 피해간 인과관계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포함되어야 함

-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에 대해 동종상품 총생산의 50% 이상을 구성하는 공동체 생산자들이 조사를 지지한다면 조사신청은 공동체산업에 의하여 혹은 공동체산업을 대표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됨¹⁶⁶⁾
 - 조사를 지지하는 공동체 생산자가 공동체산업이 생산하는 동종상품 총생산의 25% 미만인 경우에는 조사가 개시될 수 없음

- EU집행위원회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개시를 위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시, 제조장이 접수된 지 45일 이내에 조사를 개시해야 하며 공식관보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개시 내용을 공고해야 함¹⁶⁷⁾
 - 또한 수출자, 수입자, 공동체 생산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해야 함

163) 정재호 외, 『주요국의 수입규제제도 비교연구』, 2018. 6, pp. 95~105.

164) Regulation(EU) 2018/825 Article 1(1)

165) Regulation(EU) 2016/1036 Article 5(1) 및 Regulation(EU) 2016/1037 Article 10(1)

166) Regulation(EU) 2016/1036 Article 5(4) 및 Regulation(EU) 2016/1037 Article 10(6)

167) Regulation(EU) 2016/1036 Article 5(9) 및 Regulation(EU) 2016/1037 Article 10(11)

- 특히 상계관세 조사 시 발견되었던 보조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했던 것에서 기타 조사 과정에서 보조금 지급이 발견될 시 상계관세 조사 착수가 가능함¹⁶⁸⁾
- 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조사 기간은 절차 개시 전 일반적으로 적어도 6개월 이상¹⁶⁹⁾으로 정하며 관련 당사자들에게 질의서(questionnaires)를 발송하여 30일 이내에 답변을 받아야 함¹⁷⁰⁾
-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는 가능한 1년 이내에 종결해야 함
 - 확정조치의 결정에 따라서 반덤핑 조사는 최대 14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함¹⁷¹⁾
 - 확정조치의 결정에 따라서 상계관세 조사는 최대 13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함¹⁷²⁾
 - EU집행위원회는 EU자문위원회와 협의 후 잠정조치 적용 여부 또는 절차종료 여부를 결정해야 함¹⁷³⁾

2) 잠정조치의 부과

- 잠정반덤핑관세의 금액은 잠정적으로 확립된 덤핑마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다 낮은 관세가 공동체산업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적절하다면, 잠정반덤핑 관세는 덤핑마진보다 적게 부과되어야 함¹⁷⁴⁾
- 잠정상계관세의 수준은 잠정적으로 확립된 상계 가능한 보조금 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다 낮은 수준의 관세가 공동체산업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충분하다면, 잠정상계관세의 수준은 그보다 낮게 부과되어야 함¹⁷⁵⁾

168) Regulation(EU) 2017/2321

169) Regulation(EU) 2016/1036 Article 6(1) 및 Regulation(EU) 2016/1037 Article 13(9)

170) Regulation(EU) 2016/1036 Article 6(2)

171) Regulation(EU) 2018/825 Article 1(3)(b)

172) Regulation(EU) 2018/825 Article 2(3)(b)

173) Regulation(EU) 2016/1036 Article 6(9) 및 Regulation(EU) 2016/1037 Article 11(10)

174) Regulation(EU) 2016/1036 Article 7(2)

175) Regulation(EU) 2016/1037 Article 12(1)

- 잠정반덤핑관세는 조사 개시 후 60일부터 부과 가능하며 조사 개시 후 7개월 이내에, 특정상황일 경우 최대 8개월 이내에 부과해야 함¹⁷⁶⁾
 - 잠정반덤핑관세의 부과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3개월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¹⁷⁷⁾
- 잠정상계관세는 조사 개시 후 60일부터 부과 가능하며 조사 개시 후 9개월 이내에 부과해야 함¹⁷⁸⁾
 - 잠정상계관세 부과기간은 최대 4개월이며 반덤핑관세의 조사기간이 최대 14개월이고 상계관세는 최대 13개월이므로 짧은 조사기간을 반영하여 부과기간도 반덤핑관세보다 짧게 적용함¹⁷⁹⁾

3) 확정조치의 부과

- 잠정반덤핑 및 상계관세가 적용 중인 경우 확정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에 대한 제안은 잠정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적용 종료 전 적어도 한 달 전에 제출되어야 함¹⁸⁰⁾
 - 덤핑의 존재, EU 산업의 피해 및 피해에 관한 우려입증, EU 공동의 이익 등에 부합할 시 EU집행위원회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함¹⁸¹⁾
 - 상계 가능한 보조금의 존재 및 EU 산업의 피해 및 피해에 관한 우려입증, EU 공동의 이익 등에 부합할 시 EU집행위원회는 상계관세를 부과함¹⁸²⁾
- 잠정반덤핑 및 상계관세와 확정반덤핑 및 상계관세는 모두 그 결정이 내려진 이후 반입된 상품에만 적용됨¹⁸³⁾

176) Regulation(EU) 2018/825 Article 1(4) 및 Regulation(EU) 2016/1037 Article 12(1)

177) Regulation(EU) 2016/1036 Article 7(6)

178) Regulation(EU) 2018/825 Article 2(4)

179) Regulation(EU) 2016/1037 Article 12(5)

180) Regulation(EU) 2016/1036 Article 9(4) 및 Regulation(EU) 2016/1037 Article 15(1)

181) Regulation(EU) 2016/1036 Article 9(4)

182) Regulation(EU) 2016/1037 Article 15(1)

183) Regulation(EU) 2016/1036 Article 10(1) 및 Regulation(EU) 2016/1037 Article 16(1)

- 잠정반덤핑관세와 마찬가지로 확정반덤핑관세는 덤핑마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낮은 수준의 관세가 공동체산업의 피해를 상쇄하기 적절하다면 덤핑마진보다 적은 것이 바람직함¹⁸⁴⁾
- 잠정상계관세와 마찬가지로 확정상계관세의 총액은 상계 가능한 보조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보다 낮은 수준의 관세가 공동체산업의 피해를 제거하기에 적절하다면 상계 가능한 총보조금액보다 적어야 함¹⁸⁵⁾

마. 우리나라¹⁸⁶⁾

1) 조사절차 개시 및 조사

- 실질적 피해를 받은 국내 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 장관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하여 조사가 시작됨¹⁸⁷⁾
 - 국내 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실질적 피해를 받은 국내 산업에 속하는 국내 생산자와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거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를 의미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때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 국내 시장구조,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음
- 상계관세는 외국에서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고, 국내 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에 부과함¹⁸⁸⁾

184) Regulation(EU) 2016/1036 Article 9(4)

185) Regulation(EU) 2016/1037 Article 15(1)

186) 정재호 외, 『주요국의 수입규제제도 비교연구』, 2018. 6, pp. 127~141.

187) 「관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및 관세법 제53조 제1항

188) 「관세법」 제57조

-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그 물품에 대하여 해당 보조금 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음
- 2016년 규정개정을 통하여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조사 시 국내 시장구조를 고려요소로 포함시켰음¹⁸⁹⁾
 -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를 부과할 때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 국내 시장구조,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음
-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모두 신청에 찬성한 국내 생산자의 총생산량이 찬반의사를 표시한 국내 생산자의 총생산량 50% 초과 시 조사를 개시함
 - 신청에 찬성한 국내 생산자의 동종물품 총생산량 합계가 국내 산업에서 생산하는 동종물품의 총생산량 25%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 조사 개시가 불가능함
- 무역위원회는 조사 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¹⁹⁰⁾
 - 덤핑 사실 및 실질적 피해 또는 보조금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잠정조치의 필요여부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함¹⁹¹⁾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 범위 내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189) 「관세법」 제52조 제2항, 제58조 제2항

190) 「관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75조 제2항

191) 「관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75조 제3항

2) 잠정조치의 부과

-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 및 기간을 정하여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음¹⁹²⁾
 - 잠정덤핑방지관세는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도록 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조치임
 -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잠정조치를 적용함
 - 잠정상계관세 잠정조치는 보조금 등의 추정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상계관세를 부과하도록 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조치임
 - 해당 물품에 대해 보조금이 지급된 사실 및 실질적 피해 등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잠정조치를 적용함

- 잠정덤핑방지 및 상계관세는 조사 개시 후 최소한 60일이 경과된 날 이후부터 부과할 수 있으며 적용기간은 4개월 이내임¹⁹³⁾
 - 단 잠정덤핑방지관세의 경우 해당 물품의 무역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공급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음
 - 6개월을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 부과로 국내 산업 피해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제협약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의 적용기간을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음

192) 「관세법」 제53조 및 제54조

193) 「관세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80조 제2항

3) 확정조치의 부과

-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를 위하여 무역위원회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본 조사를 개시해야 함¹⁹⁴⁾
 - 본 조사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 무역위원회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연장을 요청할 때에는 2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에 대한 조사 결과가 접수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부과조치를 이행해야 함¹⁹⁵⁾
 -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에 이르는 전 과정은 조사 개시를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종결해야 함¹⁹⁶⁾
 -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18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부과 및 잠정조치는 모두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됨¹⁹⁷⁾

194) 「관세법 시행령」 제61조 제5항, 제75조 5항

195) 「관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75조 제8항

196) 「관세법 시행령」 제61조 제7항, 제61조 제7항, 제75조 제8항

197) 「관세법」 제55조, 관세법 제61조

-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대하여 국제협약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가 소급되어 부과됨¹⁹⁸⁾
 - 실질적 피해 등이 있다고 최종판정이 내려진 경우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 동안 수입된 물품
 - 실질적인 피해 우려가 있다는 최종판정이 내려졌으나 잠정조치가 없었다면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는 최종판정이 내려졌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 동안 수입된 물품
 - 당해 물품이 과거에 덤핑되어 실질적 피해를 입힌 사실이 있었으며 수입자가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잠정조치를 적용한 날부터 90일 전 이후에 수입된 물품
 - 당해 물품이 과거에 보조금 등을 받아 수입되어 실질적 피해를 입힌 사실이 있었던 경우 또는 수입자가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잠정조치를 적용한 날부터 90일 전 이후에 수입된 물품
 - 기타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수입된 물품

-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기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일부터 5년까지 적용 가능함¹⁹⁹⁾

198) 「관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199) 「관세법」 제56조 제2항, 제62조 제2항

Ⅲ. 주요국의 직권조사 사례

1. 미국

- 1980~2016년까지 미국에서 총 1,379건의 반덤핑 조사가 시행되었고, 그중 0.4%인 6건만이 직권조사로 시행됨²⁰⁰⁾
- 실제로 직권조사는 1985년 이전까지 6건이 이뤄진 점을 볼 때 직권조사 자체가 미국 통상 역사상 드문 경우라고 볼 수 있음

〈표 Ⅲ-1〉 미국 국내법에 따른 무역조치 현황(1980~2016년)

	반덤핑 (제731조)	상계관세 (제701조)	세이프가드 (제201조)	국가안보 (제232조)
조사 개시	1,379	631	31	14
직권조사	6	6	4	3
무역제한	649	279	11	2
수입할당 및 쿼터	626	236	8	1
협정유예, 자발적수출제한, 기타	23	43	3	1

자료: Steel, Aluminum, Lumber, Solar: Trump's Stealth Trade Protection, PIIE, p. 3, <https://piie.com/system/files/documents/pb17-21.pdf>(검색일자: 2019. 1. 15)

- 이처럼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 개시는 직권이 아닌 관련 기업의 청원으로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최근 미국은 집행기관의 직권조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200) Steel, Aluminum, Lumber, Solar: Trump's Stealth Trade Protection, PIIE, p. 3, <https://piie.com/system/files/documents/pb17-21.pdf>(검색일자: 2019. 1. 15)

- 2017년 2월 미국은 중국산 알루미늄 합판에 32년만에 처음으로 반덤핑 직권조사를 개시함
 - 중국산 알루미늄 합판에 대한 조사는 1985년 일본산 반도체에 대한 반덤핑 직권조사 이후 처음임
 - 1980년 초반 5건, 1985년 1건, 그리고 32년 뒤인 2017년에 1건이 시행됨

-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직권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미국의 직권조사 강화 의지는 사실상 교역국에 대한 무역제재를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실리를 중시하는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불공정무역 관행 타파를 위한 직권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함
 - 2017년 예산안에서 상무부 내 직권조사 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을 증액한 바 있음²⁰¹⁾
 - 상무부의 전체 예산은 대폭 삭감하는 와중에도 직권조사를 담당할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직권조사를 위한 정부차원의 장치를 마련함

- 본 장은 다음 두 건의 반덤핑 직권조사 사례를 통해, 직권조사가 갖는 의미와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함

가. (사례1) 일본산 반도체

- 1985년, 미국 상무부는 기업의 제소 없이 직권을 통해 일본산 반도체에 대한 덤핑조사를 실시함²⁰²⁾
 - 당시 맬컴 볼드리지 상무부장관은 기업들의 조사 청원 없이 즉각 덤핑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승인하며 반덤핑 직권조사가 개시됨

201) *America First A Budget Blueprint to Make America Great Again 2018*, 2017. 11, p.13,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17/11/2018_blueprint.pdf

202) Douglas A. Irwin, *The U.S.-Japan Semiconductor Trade Conflict*, NBER, 1996.

- 직권조사 당시, 미국의 반도체 산업은 일본산 반도체의 미국 시장 진입으로 가격 경쟁력이 상실되고 있었음²⁰³⁾
 - 일본이 1980년부터 메모리부품인 EP롬과 D램으로 미국 반도체시장에 진입하면서 1985년 중반 미국 시장의 메모리 가격은 기존보다 약 70% 떨어짐
 - 1984년 초 3달러였던 64k D램 가격은 75센트가 되었고, 31달러였던 256k D램은 3달러로 폭락함

- 조사를 통해 자국법에 근거한 직권조사를 통해 일본산 반도체가 덤핑이라는 판정을 내린 상무부는 일방적인 이행을 강요하는 반도체협정을 체결함²⁰⁴⁾
 - 총 세 차례 반도체협정이 있었고 1986년에 시작해 1996년에 종료됨
 - 1986년 제1차 미·일반도체협정에서는 일본은 미상무부의 요구에 맞춰 분기별 반도체 생산원가, 수출가격 데이터 등을 제공하기로 합의함²⁰⁵⁾
 - 제1차 협정에 따라, 양국 간 마찰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미국은 다시 일본의 우회덤핑을 이유로 1987년 추가 보복 조치를 발표해 손해배상액으로 3억달러를 상정하고 일본산 컴퓨터, TV, 전동공구에 대해 100% 보복관세를 부과함
 - 통상마찰을 줄이기 위해 1991년 제2차 협정이 체결되었고 일본은 향후 5년간 일본 국내 시장의 20%를 미국산 반도체 제품에 내주고 일본산 반도체의 저가 수출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반도체협정에 서명함
 - 1996년 제3차 협정은 두 번째 미·일 반도체 주기가 완료된 시점으로 미국 반도체 산업의 회복으로 대일 제재는 종료됨

- 반도체협정이 세 차례 진행되는 동안 일본은 자구책을 통해 통상압력에 대응했지만 결국 여러 제재수단이 중복되면서 일본 반도체 산업이 쇠락하게 됨²⁰⁶⁾

203) 당시 레이건 행정부의 미국 경제는 호황 3년째였지만 반도체 분야는 일본산 반도체의 미국시장 진출로 침체되어 있었음

204) Douglas A. Irwin(1996)

205) 유예협정(Suspension Agreement)이라고도 불림

- 제1차 협정 이후 미국의 보복조치에 대해 일본은 반도체 업계의 제조기술 향상으로 대응함
 - 미국의 통상압력에 기술향상으로 대응한 일본에 미국은 91년에 제2차 미·일 반도체협정을 체결해 일본 시장에서 외국 반도체 점유율을 20% 이상으로 하는 협정을 맺었고, 동 시기 미국 반도체 업체들은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특허료를 부과하는 등 전방위로 압박함
- 양국 간의 반도체협정 이후, GATT는 동 협정이 부분적으로 비합법적(Partly illegal)이라고 판정함²⁰⁷⁾
- GATT는 1988년 5월, 미·일간협정이 GATT 규정 제11조를 위반한 불공정무역협정이라고 판정함
 - 일본은 미·일 반도체 협정을 체결할 때는 WTO(당시 GATT)의 반덤핑제도를 활용하지 못했음
 - 당시 일본의 통상정책 기조는 양자교섭에 집중되고, 자국의 관련 법령이 매우 단순하여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데 필요한 세부내용 및 조사 절차가 불명확했음
- 반도체건의 승소판정을 계기로 일본 집행기관(당시 경제산업성)의 대외무역정책은 국제규범을 통해 외국과의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공세적법률주의(Aggressive Legalism)로 선회함²⁰⁸⁾
- 일본은 2004년과 2009년에 관련 법령을 대폭 정비하면서 반덤핑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일본은 2009년 개정된 가이드라인 제5조 6항에 반덤핑제소를 위한 상담창구를 명시해 국내 기업들이 반덤핑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함

206) 통상전문가들은 이 협정을 힘의 통상협정이라고 평가함

207) GATT Panel Report, *JAPAN-TRADE IN SEMI-CONDUCTORS*, 1988, p. 13,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gatt_e/87semcdr.pdf(검색일자: 2019. 1. 15)

208) 송준현·이경주, 『일본 반덤핑제도의 변화』, 2010, pp. 105~134.

- 하지만 GATT의 부분적 승소 판정에도 직권조사 이후 이미 타격을 입은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쇠퇴함

나. (사례2) 중국산 알루미늄

- 2017년 11월 28일, 상무부는 중국산 알루미늄 합판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함²⁰⁹⁾
 - 조사 대상 제품은 일반적인 합금 알루미늄 시트로, 너비에 관계없이 두께가 6.3mm 이하이지만 0.2mm를 초과하는 평판 압연 제품으로 코일 또는 절단된 길이로 제작된 것이며, 건축 및 건설, 운송, 기본 전기 어플리케이션, 가전 제품 등에 사용됨
- 조사기간은 2017년 4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였고, 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5명 만장일치로 중국산 알루미늄 합판이 실질적으로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정함
 - 판정결과 56.54~59.72%의 덤핑마진을 제시했고, 보조금율도 제소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소마진 이상임을 밝힘²¹⁰⁾
 - ITC의 피해 조사 후에 상무부는 반덤핑 명령서를 발부하고 동년 11월에 확정결정서를 발부함
- 미국의 직권조사에 따라 중국 역시 2018년 2월, 중국 상무부 직권으로 미국산 수수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함
 - 그 결과 2018년 4월, 미국산 수수에 178.6%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예비판정을 내렸음

209) DOC, Investigation of imports of alloy aluminum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ttps://www.commerce.gov/sites/default/files/fact_sheet_commerce_self-initiates_antidumping_duty_and_countervailing_duty_investigations_of_imports_of_common_all_o_y_aluminum_sheet_from_the_peoples_republic_of_china.pdf(검색일자: 2019. 1. 15)

210) 보조금율 제소기준은 개도국 2%, 선진국 1% 이하임

- 미국의 직권조사 개시로 중국 역시 직권조사로 대응하면서 보복성 무역조치 공방이 지속되었고 양국의 통상마찰이 전 산업에 걸쳐 확산되는 양상을 보임
-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대중 무역적자가 확대되자 중국을 통상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사용했고, 이를 계기로 「무역확대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 국내법을 근거로 고관세 및 세이프가드 시행이 지속되었음

〈표 III-2〉 미국의 반덤핑 직권조사 개시 이후 미·중 통상분쟁 양상

중국		미국	
		2017.11	중국산 알루미늄 합판 직권조사
미국산 수수 직권조사	2018.2		
		2018.7	1차 818개 340억달러 중국산 제품 (IT 및 기계류) 25% 관세
545개 340억달러 미국산 제품(농산물 및 자동차) 25% 보복관세	2018.7		
		2018.8	279개 160억달러 중국산 제품(반도체, 배터리 등 설비장치류) 25% 관세
333개 160억달러 미국산 제품(화학 공업품, 의료설비, 에너지제품) 25% 보복관세	2018.8		
		2018.9	5,745개 1900억달러 중국산 제품(농·축산물) 10% 관세
5207개 600억달러 미국산 제품(항공기, 액화천연가스, 농산물, 전자기계) 5~10% 보복관세	2018.9		
		2018.11	USTR, 중국 불공정 관행 보고서 발행
90일간 보복관세 유예	2018.12.1. (미·중 정상회담)		90일간 추가관세 유예

자료: 박진우,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국내 기업 영향 조사」, 2018. 4, pp. 2~3; 매일경제 기사,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8/09/589422/>. 검색일자: 2018. 9. 19; 아주경제 기사, <https://www.ajunews.com/view/20181202122947951>, 검색일자: 2018. 12. 1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가장 최근의 직권조사인 중국산 알루미늄 조사는 1985년 일본산 반도체 사건과 달리 전 산업에 걸친 무역 보복조치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임
 - 미·중 양국에서 다양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여 보복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반도체가 특정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파급력이 더 크다고 보여짐

2. EU

- EU집행위원회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직권조사(ex-officio)는 불공정무역 및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prima facie evidence)를 바탕으로 개시됨²¹¹⁾
 - 2013년 첫 직권조사 결정 이후 직권조사를 개시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EU집행위원회 홈페이지상 조사됨
- EU집행위원회는 2013년 5월, 사전 조사 결과 전기통신장비에 대해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했고, 낮은 가격의 제품 판매로 EU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반덤핑 및 상계관세 직권조사 개시에 대한 원칙적 결정(decision in principle)을 내림²¹²⁾
 - 그러나 중국과의 원만한 해결을 고려하여 본 결정을 바로 실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전기통신장비에 대한 중국의 대 EU 수출시장 규모는 연간 약 10억유로이며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전기통신장비의 경우 휴대전화, 라디오 네트워크 기기의 주요 부품으로 사용되고 있음

211) EU집행위원회,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1182_en.htm(검색일자: 2019. 1. 21)

212) EU집행위원회,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MO-13-439_en.htm(검색일자: 2019. 1. 21)

- EU집행위원회는 2014년 3월27일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지 않기로 발표했으며 보조금 또한 중국과의 합의에 따라 2015년 5월 15일부로 조사를 개시하지 않는 것으로 공표함²¹³⁾
- 2014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추가 조사 결과 주요 문제는 보조금이라고 밝혔으나 보조금에 대한 조사도 유보하기로 하였음
- 2015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국과 EU는 독립기구에 중국 및 EU의 이동통신 시장 모니터링 위임, 유럽 기업의 중국 내 표준 설정 기관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 보장, 공공기금 지원으로 연구개발 프로젝트 입찰 지원 시 동등한 대우 보장을 합의하였음²¹⁴⁾

213) EU집행위원회,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1182_en.html(검색일자: 2019. 1. 21)

214) 외교통상부, http://overseas.mofa.go.kr/be-ko/brd/m_7560/view.do?seq=1104729&srchFr=&srchTo=&srchWord=%EC%A7%81%EA%B6%8C&srchTp=1&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검색일자: 2019. 1. 22)

IV. 국제비교 및 요약

- 미국이 우리나라 제품에는 직권조사한 사례는 없으나, 최근 트럼프식 보호무역주의가 우리나라 산업을 압박해오는 것은 사실임
 - 미국은 우리나라의 대형구경강관(Large Diameter Welded Pipe)에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상태임²¹⁵⁾

- 따라서 본 장은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반덤핑 직권조사 규정과 집행기관을 비교해 보고 향후 반덤핑 직권조사 관련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반덤핑 직권조사 사안의 중요성은 직권조사를 마치면 무역보복이 뒤따른다는 점에서 국제비교를 통한 현안 파악이 중요하나, 각국 제도의 구조적 차이와 무역환경이 상이하므로 단순비교를 통한 개선점 도출은 한계가 있음

1. 직권조사 규정

- 우리나라는 주요국의 반덤핑조치 규정과 비교했을 때 조사신청, 조사 개시, 조사 절차 등 WTO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명확성이 있다고 판단됨
 - 반덤핑 조치를 위한 발동요건, 절차가 WTO 규정과 합치되면서 구체적인 편입

- 그러나 우리나라의 직권조사 WTO 규정에서 인정하고 있음에도 명문화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임

215) 현재 한국산 태양광, 세탁기, 철강에 이어 자동차와 반도체까지 미국 자국법을 근거로 규제하고 있음

- 다만 「관세법 시행령」에서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현재까지 주무부장관의 요청으로 조사가 개시된 사례는 없었음
 - 또한 부과 주체인 기획재정부장관이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모호한 부분이 있음
 - 반덤핑 관련 조사를 담당하는 무역위원회 또한 규정 부재로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없음
- 미국은 1930년 「관세법」을 통해 직권조사를 허용함
- 미국 상무부는 1930년 「관세법」 제702(a)조를 통해 직권조사 개시할 권한이 있으며 2017년 중국산 알루미늄에 개시된 직권조사 사례 역시 동법을 근거로 함
- 미국은 기존의 「직권조사 개시법」과 별도로, 최근 직권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직권조사 무역이행 법안」이 발의됨
- 「직권조사 무역이행법」은 상무부의 직권규정 활성화와 중소기업을 위한 무역구제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함
- EU는 기존의 직권조사 부과 규정을 개정하여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이에 따른 부과 요건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EU집행위원회의 직권조사 권한 또한 확대된 것으로 사료됨
- 규정 개정을 통해 시장경제국과 비시장경제국 개념 대신 부과 요건의 범위를 확대하여 WTO 협정상에서 규정하지 않은 중대한 왜곡 개념을 도입하였음
 - EU집행위원회는 중대한 왜곡이 발생하는 국가와 산업분야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해야 하며 이 보고서에 근거하여 조사를 개시할 수 있음
 - EU집행위원회가 중대한 왜곡과 관련한 충분한 증거를 발견하거나 관련 보고서에 근거하여 조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되면서 특정한 산업분야 혹은 국가를 목표로 한 조사가 가능해질 것임

- 중국은 1997년부터 「반덤핑조례」에 직권조사 개시 권한을 명시했지만, 시행령 등 구체적인 규정은 없음
- 직권조사는 WTO 반덤핑협정에서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정 마련 자체가 국제규범에 위배되는 것이 아님
 - WTO 반덤핑협정 제5.6조에서 허용하는 사항이어서 범국가적으로 협정위반의 소지가 있지는 않음²¹⁶⁾
- 따라서 미국발 보호무역주의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비차원에서 관련 규정들을 미리 준비할 필요는 있다고 봄
 - 미국이 중국산 알루미늄에 대한 직권조사를 개시했을 때 중국은 자국법상 직권조사 권한을 활용하여 맞대응할 수 있었음
- 단 국제사회의 우려처럼 직권조사 규정이 직권조사 남발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므로 실질적 집행은 최소한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EU는 직권조사 규정이 있으나 이를 발동한 적은 없음
 - 중국의 경우 미국의 직권조사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직권조사를 적용한 것으로, 동 사례는 남발 우려나 통상 분쟁 확대와는 다른 성격임

216) 만일 특별한 상황에서 관련 당국이 국내 산업 또는 이를 대신한 자의 서면신청이 없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한다면, 관련 당국은 조사 개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2항에 기술된 바와 같은 덤핑, 피해 및 상호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만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반덤핑협정 제5.4조).

2. 집행기관

- 직권조사를 개시하도록 규정한 주요국은 무역구제를 전담하는 집행기관을 두어 그 권한을 일임하였으며, 각국은 그 집행기관의 권한과 직무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직권조사에 대한 집행기관의 재량이 대폭 강화되는 추세임
 - 미국은 집행기관이 국제무역위원회(ITC)와 국제무역관리청(ITA)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조직 내 직권 관련 부서의 권한이 강화됨
- 미국은 2018년 기준 반덤핑조사 집행기관의 근무인원은 총 2,266명임
 - 미국 ITC의 경우, 2018년 기준 가장 많은 인원이 배치된 부서는 운영실로 배정인원은 전체 386명 중 187명임
 - 운영실의 주요 업무는 무역이 미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임
 - 미국 ITA의 경우, 수출촉진을 관장하는 수출시장실의 인원수가 전체인원의 약 40%로 가장 많았으나 2019년에는 수출시장실은 대폭 축소하고, 무역구제를 위한 조사를 담당하는 집행 및 준법실과 산업 및 분석실의 인력을 확충하기로 함²¹⁷⁾
- EU는 2018년 기준 EU 집행위원회 통상총국의 근무인원은 총 406명임
 - EU집행위원회 49개의 총국 중 무역구제업무는 EU통상총국(Taxation and Customs Union)이 담당함
- 우리나라의 무역구제와 관련된 인력은 미국, EU 등 주요국에 비해 미미한 수준임²¹⁸⁾

217) 본문 p. 38을 참조

218) 단 미국과 EU의 무역구제 집행기관은 무역구제를 위한 조사업무 외에 수출촉진, 무역통계제공 등 우리나라 무역위원회보다 업무범위가 넓어 인력·예산 상 큰 차이가 난다는 점은 일러둠

- 우리나라 무역위원회의 무역조사실의 총근무인원은 39명임²¹⁹⁾
- 주요국의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미국은 5억 9,842만달러임
 - 미국의 2019년 예산은 ITC는 전년 대비 4% 증가했고, ITA의 무역구제의 운영을 담당하는 집행 및 준법실, 분석실의 예산은 각 362만 3천달러, 118만 9천달러 증액됨
- EU의 경우 2018년 기준 예산은 1억 6,800만유로임²²⁰⁾
 - EU통상총국의 2019년 예산은 2018년 약 1억 6,800만유로보다 5% 증가한 약 1억 7,600만유로임
- 우리나라 무역위원회 예산은 2018년 약 14억원보다 31.9% 증가한 약 17억 원으로 주요국의 예산에 비해 미미한 수준임²²¹⁾
- 미국은 집행기관의 조사전담반 확대를 통해 자국 업체, 특히 중소기업의 피해조사를 사실상 대리하는 역할을 하며 이를 확대하려고 함
 - 미국은 산업피해조사를 포함한 무역구제 집행부서인 ITA의 권한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을 위한 무역구제를 지원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특히 「직권조사 무역이행법(Self-Initiation Trade Enforcement Act of 2018)」 법안의 발의는 중소기업의 무역구제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향후 이 목적에 맞춘 집행기관의 운용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음

219)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인원 기준으로 작성함

220) 2019년 1월 18일 고시환율 기준(1달러당 1121.80원, 1유로당 1277.33원) 원화로 계산 시 미국은 약 6,713억원, EU는 약 2,145억원임

221) 우리나라 및 EU의 경우 부서별 예산과 관련한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조사의 범위를 무역구제 기관 예산으로 한정하였음

- 우리나라도 인력 및 예산을 투입하여 무역구제 역량이 부족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 현재 우리나라 무역위원회는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제기되는 피해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조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
 - 중소기업의 경우 청원을 위한 기본조사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국가 지원이 필요함

-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이 확대되면서 통상마찰이 증대될 가능성이 커짐
 - 다자 또는 FTA 등을 통한 양자간 자유무역이 확대되면서 각국의 무역규모가 커지는 동시에 국가 간 우위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통상분쟁 또한 격화됨

- 직권조사 규정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통상마찰에 대비하기 위한 시행인력, 이행을 위한 예산 등이 필요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력이 필요함
 - 반덤핑, 상계 등 통상마찰 발생 시 우리나라 기업들의 무역구제를 위해 집행기관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의 축적이 요구됨

참고문헌

- 강민지, 「미국과 EU의 무역구제조치 관련 법 개정과 시사점」, 『KIEP 기초자료』, 18-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3. 20.
- 국제공정무역학회, 『한중 FTA에 따른 무역구제제도와 조직의 효율적인 운용방안 연구』, 2014. 12.
- 무역위원회, 『30년사 공정무역 질서 확립 30년을 담다』, 2017. 9.
- 박진우,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국내 기업 영향 조사」, 2018. 4.
-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2019. 1.
- 송준현·이경주, 『일본 반덤핑제도의 변화』, 2010.
- 신영수, 『미국법전의 편재방식과 법령정보의 검색·인용 방법』,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p. 15.
- 안덕근, 『불공정 무역행위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 연구소, 2012. 6. 7.
- 외교통상부, 『주요국 수입규제 가이드』, 2018. 12.
- 외교통상부, 『주요국의 수입규제제도와 대응방안』, 2017. 9.
- 이장완, 『최근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미국 반덤핑·상계관세 판정과 시사점』, 2016. 8, p. 6.
- 이재민, 『미국 통상법의 이해-무역구제 관련 실무를 중심으로』, 2009. 11.
- 이환규, 「EU의 무역구제제도 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0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11.
- 이효영·엄준현, 「주요 기간산업 WTO 보조금 분쟁연구」, 『KIEP 연구자료』, 14-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10. 30.
- 정재호·노영예·박지우, 『주요국의 수입규제제도 비교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6.

- 정재호·이민선·양지영, 『주요국의 우회덤핑방지제도 비교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12.
- EU집행위원회, *DRAFT General Budget of the European Union for the financial year 2019*. Vol. 3, 2018. 6. 21, p. 781.
- 미국 「연방법(U.S.C.)」
- 미국 「관세법(Tariff Act of 1930)」
-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 WTO 반덤핑 협정
- Council Regulation(EC) 1225/2009
- Council Regulation(EC) 597/2009
- Regulation(EU) 2016/1036
- Regulation(EU) 2016/1037
- Regulation(EU) 2017/2321
- Regulation(EU) 2018/825
- 우리나라 「관세법」
- 우리나라 「관세법 시행령」
-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28호
-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조례」 제55조
-
- U.S. Department of Commerce Budget in Brief(2019)
- ITA Budget Estimates(2019)
- Department of Commerce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Budget Estimates
- ITA Budget Report 2019
- 백약관 예산안 2019
- Douglas A. Irwin, *The U.S.-Japan Semiconductor Trade Conflict*, NBER, 1996.
- PIIE, *Steel, Aluminum, Lumber, Solar: Trump's Stealth Trade Protection*, 2017.
- GATT Panel Report, *JAPAN-TRADE IN SEMI-CONDUCTORS*, 1988

America First A Budget Blueprint to Make America Great Again 2018,
2017. 11.

DOC, *Investigation of imports of alloy aluminum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7.

미 의회 홈페이지, <https://www.congress.gov>

미 연방 홈페이지, <https://www.federalregister.gov>

USITC 홈페이지, <https://www.usitc.gov>

ITC 홈페이지, <https://www.usitc.gov>

무역위원회, <https://www.ktc.go.kr>

수입규제대응센터, <http://antidumping.kita.net>

외교통상부, <http://www.mofa.go.kr>

EU집행위원회, <http://trade.ec.europa.eu/>

KDI, <https://eiec.kdi.re.kr/index.jsp>

관세연구 18-04
주요국의 반덤핑 직권조사 규정 연구

발 행 2018년 12월 31일
저 자 정재호 · 노영예 · 박지우
발행인 김유찬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조 판 및 인 쇄 (주)계문사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ISBN 978-89-8191-973-3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관세연구 18-04

주요국의 반덤핑 직권조사 규정 연구